

# 2022년 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도로관리사업소 산림환경연구원)



경 상 남 도  
(감 사 위 원 회)

# < 목 차 >

## ① 수산자원연구소

연번	제 목	페이지
1	○○○○ ○○○○ 연구센터 건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1
2	대체인력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5
3	참다랑어 박제품 제작 세출예산 집행과목 등 부적정	8
4	유연근무자 출퇴근 관리 부적정	11
5	수산종자 유·무상 분양기준 미비 등 업무처리 부적정	16
6	지출원 부재 중 회계처리 부적정	20
7	불용물품 매각처분 및 정수물품 관리 부적정	25

## ② 수산안전기술원

번호	제 목	페이지
1	기간제노동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31
2	유연근무자 출퇴근 관리 부적정	36
3	기술지도선 수리공사 등 하자검사 미이행	41
4	관공선 관리운영 기준 미제정 및 의무검사비 지원신청 누락	46
5	도시민 ○○○○○○사업 수탁기관 지도·감독 등 부적정	51
6	지출원 부재 중 회계처리 부적정	62
7	공무상 출장여비 및 급량비 지급 부적정	67

## ③ 도로관리사업소

번호	제 목	페이지
1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등 준공정산 부적정	72
2	건설공사 선급금 배분 관리·감독 부적정	78
3	고정검문소 차량 운행제한 단속업무 운영 부적정	82
4	관급자재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업무처리 부적정	87
5	○○○○○ 운영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미반납	95
6	공무상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99
7	시설부대비(공사감독 피복) 집행 부적정	103
8	지출원 부재 중 회계처리 부적정	109
9	국도○○호선 ○○ ○○ 병목지점 개선사업 행정절차 등 미이행	113
10	○○○○지구 정비공사 공사감독 업무 및 준공검사 처리 등 소홀	118

## ④ 산림환경연구원

번호	제 목	페이지
1	○○○○○○지구 산림유역관리사업 (사방사업) 등 공사감독 부적정	131
2	산림유역관리사업 일상감사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부적정	137
3	유연근무자 출·퇴근 관리 부적정	143
4	당직근무자 등 초과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147
5	지출원 부재 중 회계처리 부적정	151
6	차량 임차용역 분할 수의계약 등 부적정	155
7	공사감독 피복비(시설부대비) 수령 부적정	160
8	○○○○○ 보완사업(입구 조형물 교체) 공사감독 부적정	164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시정 요구

제 목 ○○○ ○○○○ 연구센터 건립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수산자원연구소  
조 치 기 관 수산자원연구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수산자원연구소는 ○○○ ○○○○ 연구센터 건립공사(이하 ‘센터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고 [표 1] 같이 센터공사를 준공하였다.

[표 1] ○○○ 연구센터 건립공사(건축 1, 2차분)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내용	도급금액	도급자
합 계			<b>5,710,151천원</b>	
○○○ ○○○○ 연구센터 건립공사 (건축1차분)	'20. 1. 2. ~ '20. 11. 26.	○○○○○ ○○○○ 건축 (본관동, 연구소동, 부속동, 관사동)	3,613,176천원	(주)○○○○○○○ 대표 ○○○
○○○ ○○○○ 연구센터 건립공사 (건축2차분)	'20. 12. 29. ~ '21. 3. 26.		2,096,975천원	

[출처 : 수산자원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사용기준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사용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사 도급 내역서 상에 반영된 노무비 등의 항목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사용기준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건설공사를 준공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실적과 비용을 정확히 확인·정산하여 도급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한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수산자원사업소에서는 센터공사의 도급자[(주)○○○○○○ 대표 ○○○]가 2020. 6월부터 2021. 1월까지 도급내역서 따라 매월 노무비를 지급했던 ○○○ 등 5명에 대해 [표 2]와 같이 안전관리비 상 노무비를 중복 청구<sup>1)</sup>하였는데도 증빙서류(입금내역) 확인없이 도급자에게 [표 3]과 같이 12,592천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1) 노무비 중복청구 근거 : 수산자원연구소-7534호(2020.12.22.), 패류양식센터-1290호(2021.4.13.)

[표 2] 안전관리비 상 노무비 중복 지급 현황

년 월	안전관리비 중복 지급 노무비		매월 청구한 노무비 지급 내역
	지급명목	지급금액	
합 계		9,980천원	
'20. 6월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물 설치)	660천원	보통인부 ○○○ 노무비 982천원 지급 [ 근거 : 도급자가 '20. 7. 7. 수산자원연구소 제출]
'20. 7월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계단난간 설치)	440천원	보통인부 ○○○ 일용노무비 1,001천원 지급 [ 근거 : 도급자가 '20. 8. 4. 수산자원연구소 제출]
'20. 8월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물 설치)	1,100천원	보통인부 ○○○ 일용노무비 2,202천원 지급 [ 근거 : 도급자가 '20. 9. 8. 수산자원연구소 제출]
'20. 9월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물 설치)	240천원	○○○ 일용노무비 952천원 지급 [ 근거 : 도급자가 '20.10. 8. 수산자원연구소 제출]
'20.10월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낙하물방지망 설치)	2,300천원	비계공 일용노무자 ○○○ 1,580천원, ○○○ 1,580천원 지급 [ 근거 : 도급자가 '20.11.10. 수산자원연구소 제출]
'20.11월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물 설치)	240천원	보통인부 ○○○ 일용노무비 238천원 지급 [ 근거 : 도급자가 '20.12.08. 수산자원연구소 제출]
'21. 1월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안전시설물 해체)	5,000천원	비계인부 ○○○ 1,750천원, ○○○ 1,470천원 ○○○ 1,715천원 지급 [ 근거 : 도급자가 '21. 2. 2. 수산자원연구소 제출]

[출처 : 수산자원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도급자에게 부적정 지급 비용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① 안전관리비	9,980천원	중복 지급 인건비
② 일반관리비	499천원	① × 5.0%
③ 이윤	969천원	(①+②) × 9.25%
④ 공급가액	11,448천원	① + ② + ③
⑤ 부가가치세	1,144천원	④ × 10%
⑥ 부적정 지급액	12,592천원	⑤ + ⑥

※ 도급자 부적정 지급비용은 제비율(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을 할증해 산정한 금액임

[출처 : 수산자원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계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향후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건설공사의 준공정산 등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등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정산 처리한 당시 **실무 담당자 수산자원연구소 지방○○○○○○○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 ②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등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중복 지급된 노무비 **12,592천 원**은 회수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제 목 대체인력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수산자원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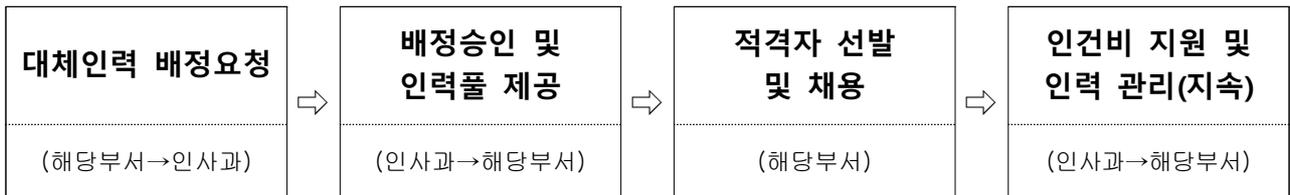
조 치 기 관 수산자원연구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및 「지방공무원 균형 인사 운영 지침」 등에 따라 직원의 휴직 등 사유 발생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은 절차를 거쳐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 1] 대체인력 채용 절차



[출처 : 2020년 대체인력뱅크 및 업무대행제도 안내(경상남도 인사과-4611, 2020. 2. 25.)]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5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7조의7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출산휴가를 허가하거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Ⅱ. 양성평등 인사관리, 3. 대체인력의 관리 및 운용, 가. 기본방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휴직 및 출산휴가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선발하여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고,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대체인력뱅크 인력을 선발하여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상남도 인사과에서는 2020. 2. 25. ‘2020년 대체인력뱅크 및 업무대행제도 안내’(인사과-4611) 공문을 통해 출산휴가·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 최소화 및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하였다.

아울러 대체인력은 대체인력뱅크 명단 중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업무능력이 요구되는 등 해당 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21조에 따라 부서장 책임하에 자격요건, 선발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인력풀 외에서 채용가능함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업무공백 최소화 등을 이유로 필요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병가 또는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채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에 따라 공고와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2016. 1. 25.부터 수산종묘생산시설 기계·전기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지방○○○○○(○○○○○) ○○○<sup>1)</sup>의 계약기간이

---

1) 2016. 1. 25.부터 2021. 1. 24.까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방○○○○○(○○○○○)로 근무하였으며, 2021. 5. 12.부터 2022. 2. 22.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로 근무하고 있음

2021. 1. 24.자로 만료되자, 임기제공무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공백은 대체인력 채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새로운 임기제공무원이 채용될 때까지 업무공백을 방지한다는 사유로 위 ○○○를 별도의 공고나 서류전형·면접 등의 채용 절차 없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2021. 1. 25.부터 같은 해 5. 11.까지 근무하게 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연구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어 부득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형식으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및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21조 등을 위반하여 대체인력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수산자원연구소 지방○○○○ ○○○(현 ○○○과)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합니다.(훈계)
- ②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제 목 참다랑어 박제품 제작 세출예산 집행과목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수산자원연구소  
조 치 기 관 수산자원연구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사육 중 폐사한 참다랑어 사체를 활용해 연구소 홍보 등에 이용하고자 [표 1]과 같이 참다랑어 박제품을 제작하였다.

[표 1] 참다랑어 박제품 제작 현황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비 고
참다랑어 박제 제작 및 납품	18,480,000원	'20. 2. 5. ~ '20. 5. 24	1인 수의계약 ※ 나라장터 견적 제출 공고 ⇒ 2회 유찰	○○○○ ○○○○○(주)	

[출처 : 수산자원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 2.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경비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관련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등에 따르면 시험연구비는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수책정 대상 물품 또는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비정수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박제품 제작을 위한 경비를 집행할 경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행해야 하며 시험연구비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2019. 12. 14. 사육 중이던 참다랑어 1개체<sup>2)</sup>가 폐사하자 이를 인양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해당 사체를 활용해 참다랑어 성장도 조사 등 양식연구와 연구소 홍보에 이용하고자 [표 2]와 같이 18,480천원의 예산을 들여 참다랑어 박제품을 제작하면서, 참다랑어 폐사를 예상할 수 없어 2020년도 당초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던 시험연구비에서 이를 집행하였다.

[표 2] 참다랑어 박제품 제작 예산 집행 현황

지출건명	지출일자	지출금액	세출과목	
			집행과목	적정과목
참다랑어 박제 제작	2020. 6. 29.	18,480,000원	시험연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출처 : 수산자원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 3. 물품 관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및 제2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등에 따르면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물품카드등록부 등의 장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비치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물품 제조·구매 등으로 이를 취득한 경우 물품 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해당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길이 약 203cm, 무게 약 175kg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2020. 6. 22. 계약상대자인 ○○○○(주)로부터 계약목적물인 참다랑어 박제품을 납품받고, 2020. 6. 29. 계약금액 18,48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22. 2. 22.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았다.

## 관계기관 의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참다랑어 박제가 연구결과물의 보존이라 판단하여 시험연구비에서 집행하였고, 참다랑어 사체를 냉동실에서 장기간 보관할 경우 수분증발 등에 의한 훼손으로 연구적 가치 하락이 우려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통해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및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등에 따라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경비를 집행하고, 취득한 물품은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등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제 목 유연근무자 출·퇴근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수산자원연구소

조 치 기 관 수산자원연구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3조 등에 따라 직원들이 일·가정 양립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2 및 제3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sup>1)</sup>을 변경하는 근무 등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V.유연근무제 5. 유형별 운영지침 가. 탄력근무제 (1)시차출퇴근형에는 1일 8시간의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출퇴근시간을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토요일은 휴무함이 원칙이며,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규정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실시기간은 1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단위도 가능하며,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비상근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9:00~18:00)로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지문인식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상남도 인사과에서는 “2019년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계획(인사과-19202(2019. 7. 2.)호)”을 통보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유연근무 대상자는 출퇴근시 반드시 초과지문인식기를 체크하고 부서별 유연근무 참여자에 대한 자체 복무관리 철저를 안내하였다.

따라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출·퇴근시간을 등록하고, 교육, 관외 출장 등에는 유연근무를 취소하는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유연근무제 운영실태를 주기적<sup>2)</sup>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2019. 11. 20.부터 2022. 2. 22. 감사일 현재까지 부서직원 33명 총 297회<sup>3)</sup>의 유연근무를 승인처리 하면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 점검 실시 등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는 시차출퇴근제를 승인받고도 지문인식시스템에 조기 출근 등록 후 5회의 퇴근을 미등록 하였으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실태를 점검하여야 함

3)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승인 횟수를 말함

○○○은 월간 또는 분기, 최대 연간 단위로 유연근무를 실시하면서 조기 출근 등록 후 7회의 퇴근을 미등록하였고, ○○ ○○○○과정 교육, 온라인 재택교육 등 장기교육을 실시하면서 3회의 유연근무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관외출장으로 유연근무제에 따른 출퇴근 등록이 어려운 상황에도 유연근무를 취소하지 않고 출장을 실시하여 24회의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 유연근무자 복무규정 부적정 현황

연번	직 급	성 명	유 형	유연근무 일자	승인시간	지문등록 시간	위반내용
1		○○○	시차출퇴근제	'21.06.18.	7:30~16:30	7:27~	퇴근 미등록
2		○○○	시차출퇴근제	'21.06.25.	7:30~16:30	7:30~	퇴근 미등록
3		○○○	시차출퇴근제	'21.07.28.	7:00~16:00	6:51~	퇴근 미등록
4		○○○	시차출퇴근제	'21.08.18.	7:00~16:00	6:55~	퇴근 미등록
5		○○○	시차출퇴근제	'21.10.01.	7:00~16:00	7:58~	퇴근 미등록
6		○○○	시차출퇴근제	'20.01.15.	8:00~17:00	6:30~	퇴근 미등록
7		○○○	시차출퇴근제	'20.03.19.	8:00~17:00	6:30~	퇴근 미등록
8		○○○	시차출퇴근제	'20.06.17.	8:00~17:00	6:01~	퇴근 미등록
9		○○○	시차출퇴근제	'20.09.16.	8:00~17:00	5:56~	퇴근 미등록
10		○○○	시차출퇴근제	'21.01.12.	7:50~16:50	7:06~	퇴근 미등록
11		○○○	시차출퇴근제	'21.04.21.	8:00~17:00	6:56~	퇴근 미등록
12		○○○	시차출퇴근제	'21.09.15.	8:00~17:00	7:32~	퇴근 미등록
13		○○○	시차출퇴근제	'21.01.18.~ '21.01.29.	8:00~17:00	-	***교육 유연근무미변경
14		○○○	시차출퇴근제	'21.04.05.~ '21.04.09.	8:00~17:00	-	온라인재택교육 유연근무미변경
15		○○○	시차출퇴근제	'21.09.08.~ '21.09.10.	8:00~17:00	-	****교육 유연근무미변경
16		○○○	시차출퇴근제	'19.11.28.	8:00~17:00	-	출퇴근미등록 **해상출장
17		○○○	시차출퇴근제	'20.02.17.	8:00~17:00	-	출퇴근미등록 **관외출장
18		○○○	시차출퇴근제	'20.02.21.	8:00~17:00	-	출퇴근미등록 **관외출장
19		○○○	시차출퇴근제	'20.05.07.	8:00~17:00	-	출퇴근미등록 ** **출장
20		○○○	시차출퇴근제	'20.05.28.	8:00~17:00	-	출퇴근미등록 **출장

연번	직 급	성 명	유 형	유연근무 일자	승인시간	지문등록 시간	위반내용
21		○○○	시차출퇴근제	'21.02.22.	8:00~17:00	-	출퇴근미등록 **출장
22		○○○	시차출퇴근제	'21.06.24.	8:00~17:00	-	출퇴근미등록 **출장
23		○○○	시차출퇴근제	'21.07.02.	8:00~17:00	-	출퇴근미등록 **출장
24		○○○	시차출퇴근제	'21.07.05.	8:00~17:00	-	출퇴근미등록 **출장
25		○○○	시차출퇴근제	'21.07.09.	8:00~17:00	-	출퇴근미등록 **출장
26		○○○	시차출퇴근제	'21.08.31.	8:00~17:00	-	출퇴근미등록 **출장
27		○○○	시차출퇴근제	'21.10.19.	8:00~17:00	-	출퇴근미등록 **출장
28		○○○	시차출퇴근제	'21.11.02.	8:00~17:00	-	출퇴근미등록 **출장
29		○○○	시차출퇴근제	'21.11.03.	8:00~17:00	-	출퇴근미등록 ***출장
30		○○○	시차출퇴근제	'21.11.04.	8:00~17:00	-	출퇴근미등록 ***출장
31		○○○	시차출퇴근제	'21.11.05.	8:00~17:00	-	출퇴근미등록 ***출장
32		○○○	시차출퇴근제	'21.11.09.	8:00~17:00	-	출퇴근미등록 **출장
33		○○○	시차출퇴근제	'21.11.11.	8:00~17:00	-	출퇴근미등록 **출장
34		○○○	시차출퇴근제	'21.11.23.	8:00~17:00	-	출퇴근미등록 **출장
35		○○○	시차출퇴근제	'21.11.25.	8:00~17:00	-	출퇴근미등록 **출장
36		○○○	시차출퇴근제	'21.12.09.	8:00~17:00	-	출퇴근미등록 ***출장
37		○○○	시차출퇴근제	'21.12.27.	8:00~17:00	-	출퇴근미등록 **출장
38		○○○	시차출퇴근제	'22.01.12.	8:00~17:00	-	출퇴근미등록 **출장
39		○○○	시차출퇴근제	'22.01.26.	8:00~17:00	-	출퇴근미등록 **출장

[출처 : 수산자원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유연근무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지문인식시스템에 출퇴근 등록관리가 누락 되었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월 1회 이상 유연근무제 운영 점검을 실시하는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 조치할 사항

-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및 제3조 등을 위반하여 유연근무자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복무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수산자원연구소 지방○○○○○○○○○○○○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합니다.(**훈계**)
-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및 제3조 등을 위반하여 유연근무자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수산자원연구소 지방○○○○○○○○○○○○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 ③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통보

제 목 수산종자 유·무상 분양기준 미비 등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수산자원연구소

조 치 기 관 수산자원연구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국·도립 등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이하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이라 한다) 제14조 등에 따라 신품종 개발 및 어업생산성 향상 실용기술 연구 등 업무를 추진하여 [표 1]과 같이 생산된 수산종자를 분양 공급하였다.

[표 1] 수산자원연구소(본소) 수산종자 분양 현황

년도	어류		패류	
	대표 품종	개(마리)	대표 품종	개(마리)
2019	참돔	40,165	홍가리비 등 2종	268쌍
			비단가리비 등 2종	2,300,000
2020	참돔	20,000	비단가리비 등 2종	3,024,000
2021	-	-	비단가리비 등 3종	10,011,000

※ 수정란 : ('19) 능성어 등 2종 50,500알, ('20) 능성어 등 3종 64,000알, ('21) 능성어 등 4종 61,640알

[출처 : 수산자원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같은 법 제41조에 행정관청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7조에 따르면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장은 종자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종자의 분양계획 물량, 단가,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의 내역을 관할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역별 수산연구소장, 시·도지사, 분양 대상 품종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에게 송부하고 이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14조에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는 이 요령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종자 분양 및 방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분양의 구분, 분양공고 및 신청, 분양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소장은 생산된 수산종자를 분양하고자 할 때는 해당 수산종자의 분양가격과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도보에 게재하거나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목적 등 달성을 위하여 수산종자 분양에 관한 유·무상 분양기준, 분양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수산종자를 분양할 때에는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을 도보에 게재하거나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연구사업 수행 중 생산된 수산종자의 분양업무를 추진하면서 유·무상 분양기준, 대상자 선정방법, 분양공고 및 신청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 규칙 등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표 2]와 같이 2019. 11. 20.부터 2022. 2. 22. 감사일 현재까지 공익기관이 아닌 일반에게 무상 분양하면서도 분양 계획, 방법 및 절차 등을 도보에 게재 없이 소장의 방침만으로 특정 수산 관련 업체, 기술교육 참가자 및 종자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분양하였고, 무상분양 후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지 아니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분양 목적대로의 활용 유무 및 연구 성과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표 2] 수산자원연구소(본소) 수산자원 무상분양 현황

구 분	분양일자	선정조건	분양대상자	분양사유	분양계획수립/ 시험결과 보고서
참돔	'19.12.27.	관내유일 수정란 생산업체	○○○○○	양식생산성 향상 연구	수립 / 미제출
해만가리비	'20.1월	패류인공종자 협회 추천	○○○ 등 16명	미국산 현장적응시험	수립 / 미제출
자주복	'20.5.8.	시군추천	○○○ 등 5명	시험연구 부산물	수립 / 미제출
비단가리비	'20.5월	어업인 기술교육참가자	○○○ 등 5명	시험양성	수립 / 미제출
능성어	'20.5~6월	시군추천	○○○ 등 27명	시험연구 부산물	수립 / 미제출
민어	'20.10.1.	시군추천	○○○ 등 5명	시험연구 부산물	수립 / 미제출
해만가리비	'21.3.19.	패류인공종자 협회 추천	○○○ 등 8명	유전적 다양성 확보	수립 / 미제출
굴	'21.4.30.	공동연구	○○○○○○○○○ ○○조합	공동연구 Mou체결	미수립 / 미제출
자주복	'21.5.11.	시군추천	○○○ 등 2명	시험연구 부산물	수립 / 미제출
무늬바리	'21.5.28.	시군추천	○○○○○센터	시험연구 부산물	수립 / 미제출
비단가리비	'21.5.31.	시군추천	○○○ 등 2명	성장도 시험조사	수립 / 미제출
능성어	'21.6월	시군추천	○○○ 등 13명	시험연구 부산물	수립 / 미제출
능성어	'21.6.10.	공동연구	○○○대학교	공동연구 Mou체결	수립 / 미제출

구 분	분양일자	선정조건	분양대상자	분양사유	분양계획수립/ 시험결과 보고서
능성어	'21.6.16.	공동연구	○○○○○○ 조합법인	공동연구 Mou체결	미수립 / 미제출
무늬바리	'21.6.16.	공동연구	○○○○○○ 조합법인	공동연구 Mou체결	미수립 / 미제출
민어	'21.9.18.	분양요청	○○○○○○ 과학원	지자체간 연구협력	미수립 / 미제출

[출처 : 수산자원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2021. 4월부터 9월에는 ○○○○○○○협동조합, ○○○○○○조합법인 등 3개 업체(지자체 연구단체 포함)에 대하여 공동연구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분양품종, 수량 등 무상분양에 대한 계획수립이나 사전보고 없이 분양처리 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수산종자 분양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다소 미흡하나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및 「수산자원연구소 분양·자원조성 및 사후관리방안」(수산자원연구소-4100(2021. 7. 21.)호)을 마련하여 수산생물 시험연구, 어업인 기술교육 등의 부산물 일부를 분양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수산종자 분양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무상 분양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유·무상 분양기준, 분양대상자 선정, 무상분양 후 사후관리 등 주요한 업무 처리 기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내부 규정의 미비점이 인정된다.

## 조치할 사항

수산자원연구소장은 「국·도립 등 수산자원 조성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제14조 등에 따라 수산종자 분양의 투명한 절차와 무상분양의 사후관리를 위해 유·무상 분양기준, 분양대상자 선정, 무상 분양 후 시험결과 보고 등 세부적 기준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제 목 지출원 부재 중 회계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수산자원연구소  
조 치 기 관 수산자원연구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패류양식연구센터에서는 「지방회계법」 제10조 및 「경상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업무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수산자원연구소 회계관직 지정 현황

구분	재무관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수산자원연구소	연구소장	관리담당	회계담당자
민물고기연구센터	센터장	연구담당	회계담당자
패류양식연구센터	센터장	패류연구담당	회계담당자

[출처 :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패류양식연구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기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실 및 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 직원 중 최상급자, 분장사무 중 사무분야 담당 순위에 의한 사무관의 순으로 대리하며,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 제118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그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패류양식연구센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출업무를 대리할 회계관계직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지 않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고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패류양식연구센터에서는 감사대상 기간('19. 11. 20.부터 '22. 2. 22. 감사일 현재까지) 동안 [표 2]와 같이 지출원이 휴가 등으로 부재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회계담당자가 지출원의 구두승인 및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아이디를 공유하여 지급명령을 이행하거나, 회계관계공무원이 아닌 권한 없는 직원의 대리 결재를 받아 총 176건, 658,679천 원을 집행하였다.

[표 2] 지출원 부재중 지출집행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176	658,679	32	162,345	140	493,359	4	2,975
수산자원연구소	88	301,699	32	162,345	56	139,354	-	-
민물고기연구센터	11	62,000			11	62,000	-	-
패류양식연구센터	77	294,980	-	-	73	292,005	4	2,975

[출처 :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패류양식연구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 지출원 부재 중 지출현황 [별첨] 참조

### 관계기관 의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관련 법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지출하는 등 관련 업무 처리에 미숙함이 있었으며, 향후 회계관계공무원 부재가 발생할 경우 대리 관직지정 후 회계처리를 하는 등 회계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등을 위반하여 적법절차에 따른 지출행위를 하지 않은 실무담당자 수산자원연구소 지방○○○○ ○○○, 수산자원연구소 지방○○○○○○○○ ○○○, 수산자원연구소 지방○○○○ ○○○(현 지방○○○○○○○○, ○○○○과), 패류양식연구센터 지방○○○○○ ○○○(현 ○○○○관)과, 실무책임자(지출원) 수산자원연구소 지방○○○○ ○○○, 수산자원연구소 지방○○○○ ○○○(현 ○○○○○○단), 패류양식연구센터 지방○○○○ ○○○(현 ○○○○과, 휴직)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②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별첨]

지출원 부재 중 지출현황

- 생략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제 목 불용물품 매각처분 및 정수물품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수산자원연구소  
조 치 기 관 수산자원연구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및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등에 따라 [표 1] 과 같이 취득물품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표 2] 와 같이 보유중인 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수명이 다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불용결정하고 매각 및 폐기처분 하였다.

[표 1] 수산자원연구소 물품보유 현황

(단위: 천원, 2022. 2. 22. 현재 기준)

연도	품목수	수량(점)	취득금액
2022	실체현미경 등 203종	927	1,723,733

[출처 : 수산자원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 처분내역

(단위: 천원)

처분일자	처분물품	매각수익	처분(매각) 방법
계	386	132	수의견적 후 일괄 매각(폐기)
'21.3.16.	80개 품목, 356점	132	
'21.5.4.	5개 품목, 30점	-	

[출처 : 수산자원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 2. 불용물품 매각처분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불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상태를 재확인 및 검증을 실시하여 처분방법을 결정하여야 하고, 폐기처리가 아닌 일반 불용품을 매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든 물품의 매각은 일반입찰로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시스템)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하고,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sup>1)</sup>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취득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인 경우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하고,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가 직접 조사한 견적 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으로 처분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폐기처분 시 공무원의 입회하에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1) 처분단가 10만원 이하, 처분총액 500만원 이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따라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불용결정을 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와 거래 실례가격 등을 참작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하며, 폐기처분 시에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2021. 3. 16.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용결정을 한 물품(356점, 취득가액 185백만 원)에 대한 매각 및 폐기를 진행하면서 물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매각 가능물품과 폐기물품으로 분류하고 실체현미경<sup>2)</sup> 등 고가의 취득물품은 제3자가 직접 조사한 감정평가액 또는 거래 실례가격을 참고하여 일반입찰로 매각 처리함이 적정함에도, 매각품목과 폐기품목의 구분 없이 일괄 폐기물품으로 분류하여 고철수집판매업자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일괄 매각 및 폐기<sup>3)</sup>처분하였다.

이에 감사기간('22. 2. 16. ~ 2. 22.) 동안 매각 및 폐기 처리된 물품 중 2020년~2021년 타과(회계과, 수산안전기술원) 동일 내용연수의 동일품목 감정평가액, 온비드 거래 실례가격을 참고하여 처분 예정가격을 검토한 결과 [표 3]과 같이 수의매각 처분 가격과 비교 시 최소 1,004천 원의 매각 수익이 상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수의매각 처분에 따른 매각수익 상실 현황

처분일자	처분물품	매각(폐기)액(A)	매각가격(산정)(B)	매각수익 상실액(B-A)
'21.3.16.	총 80개 품목, 356점	525	1,529	1,004

[출처 : 수산자원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불용물품 매각가격 재산정 현황 [별첨] 참조

2) 2019년 온비드 동일모델 동급사양 거래 실례가격 220천 원

3) 매각수익 132천 원(매각수익 525천 원, 폐기처리비용 -400천 원)

또한 물품에 대한 폐기 처분 시에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물품별로 매각 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폐기(해체)처분하여야 하나, 2021. 3. 16., 2021. 5. 6.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처분(85개 품목, 386점) 시 불용물품 폐기(해체)조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다.

### 3. 정수배정 승인 전 정수물품 취득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제9조 및 제24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무관은 위와 같은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정수관리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정수 배정되지 않은 경우 예산반영 및 취득할 수 없음에도 [표 4]와 같이 2020. 9. 28. 정수관리대상물품인 비디오프로젝터를 정수 승인 이전에 구입·취득하였다.

[표 4] 정수승인 전 물품 취득 현황

(단위 : 천 원)

부서	물품명	취득날짜	정수승인일	예산확보 내역	취득가격	부적정 현황
수산자원 연구소	비디오 프로젝터	'20.9.28.	'21.2.18.	2020년 당초	5,890	정수승인 이전에 취득

[출처 : 수산자원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처리담당자의 관계법령에 대한 연찬 부족 등으로 업무처리에 미숙함이 있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물품관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 정수물품 구입 및 불용물품 처분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취득·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첨]

**불용물품 매각가격 재산정 현황**

- 생략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제 목 기간제노동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수산안전기술원

조 치 기 관 수산안전기술원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21조 등에 근거하여 [표 1]과 같은 절차에 따라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채용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1] 기간제노동자 채용 절차



[출처 : 기간제노동자 채용관련 업무 매뉴얼(경상남도 인사과-7380, 2021. 3. 22.)]

[표 2] 기간제노동자 채용 현황

(’18. 7월 ~ ’22. 3월 현재)

기관명	연도별	채 용 목 적	인 원
거제지원	2018	수산생물 폐사체 수거처리 사업 운영	3명
	2019	"	4명
	2020	"	4명
	2021	"	4명

[출처 :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경상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2018. 11. 15. 훈령 제1386호) 제1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부서의 장은 일시·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무에 한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간신문, 방송, 사용기관 홈페이지 등에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 채용관련 내용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XI.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2.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에 따르면 6급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자격으로 ①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②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③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7급 임기제공무원은 ①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②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③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에서는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관련 내용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을 감안하되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자격에 비추어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에서는 2018. 12. 13. ‘수산생물 폐사체 수거 처리사업 2019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sup>1)</sup>를 하면서 10일간의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2018. 12. 13.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7일간으로 단축하여 채용공고를 하였다.

1) 채용인원(4명) : 폐사체 처리장 시설관리자 1명, 폐사체 수거선 선장 1명, 폐사체 수거 및 운영보조 2명  
근무기간(12개월) : 2019. 1. 2. ~ 2019. 12. 31.

아울러 위 공고내용 상 ‘폐사체 처리장 시설관리자(1명)’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주요업무 내용이 해상가두리 수산생물 폐사체의 위생적 수거·처리와 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장비(고온고압멸균기, 파쇄혼합기 등) 운용 등으로 별도의 특수한 능력이나 경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업무임에도, 응시자격으로 6급 임기제 공무원 응시자격인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보다 과도한 ‘수산관련 공공기관 20년 이상 근무경력’을 필수사항으로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응시자격을 ‘수산관련 공공기관 20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제한한 결과 별도의 경력사항을 요구하지 않은 ‘폐사체 수거선 선장’에는 1명 모집에 2명이 지원하였고, ‘폐사체 수거 및 장비 운영 보조’에는 2명 모집에 5명이 지원한 반면, ‘폐사체 처리장 시설관리자’에는 ○○○<sup>2)</sup> 1명이 단독 지원하여 면접 후 그대로 최종 합격 처리되었다.

또한 2020. 12. 14. ‘수산생물 폐사체 수거처리 시범사업 2021년도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sup>3)</sup>를 하면서도 위와 같이 ‘폐사체 처리장 시설관리자’(1명) 응시자격으로 ‘수산관련 공공기관 20년 이상 근무 경력자’라는 경력사항을 추가(필수)사항으로 명시하였고, ○○○ 1명이 단독 지원하여 최종 합격 처리되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수산물 폐사체 수거처리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확정 및 심의, 면접기간 등 여러 급박한 공무수행으로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폐사체 처리시설에 공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관계로 기간제 노동자 1명은 수산전염병 확산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었으며, 고온·고압 멸균기, 파쇄 혼합기 등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시설과 장비에 대한

2) 19○○. 4. 6. 국립수산진흥원 수산기원보로 공무원을 시작하여 20○○. 6. 30.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 사무소장(○○○○○○○사무관)으로 퇴직한 자로, 20○○. 7월부터 20○○. 11월까지 ○○지원에서 운영하는 수산생물 폐사체 수거처리장에서 시설관리자(기간제)로 근무하였음

3) 채용인원(4명) : 폐사체 처리장 시설관리자 1명, 폐사체 수거선 선장 1명, 폐사체 수거 및 운영보조 2명  
근무기간 : (시설관리자·선장) 2021. 1. 4. ~ 2021. 11. 30. (운영보조) 2021. 1. 4. ~ 2021. 10. 31.

안전사고 예방, 악취·소음 발생 등 민원발생 대응, 현장 근로자들의 복무 관리 등을 위해 수산관련 6급 이상 공무원 경력이 필요하여 응시자격으로 20년 이상의 공무원 경력을 요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공고기간과 관련하여 당시 관련 규정에 따를 때 공고기간은 10일간 운영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었고 달리 단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으므로 공고기간을 7일간 운영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수산전염병 확산 예방·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여 20년 이상의 공무원 경력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6급 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으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내지는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함에 있어 ‘20년 이상 관련분야 공무원 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한 것은 전문성이 다소 필요한 업무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폐사체 처리장 시설 관리’라는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응시자격으로 ① 수산질병관리사, 수산양식기사 등 수산관련 자격증 보유자, ② 수산생물 방역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하였음에도, ‘2019년도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함에 있어 ‘수산관련 공공기관 20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상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수산관련 공공기관 20년이상 근무경력자’라는 과도한 응시자격 제한으로 일반도민의 응시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수산안전기술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조치할 사항

① 「경상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 등을 위반하여 기간제 노동자 채용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 지방○○○○ ○○○(현 ○○○○○과), 실무담당자 지방○○○○○ ○○○(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② 수산안전기술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시정 요구

제 목 유연근무자 출·퇴근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수산안전기술원

조 치 기 관 수산안전기술원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1조의2 및 제3조 등에 따라 직원들이 일·가정 양립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sup>1)</sup>을 변경하는 근무 등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V.유연근무제 5. 유형별 운영지침에 따르면 탄력근무제는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등으로 구분하고 시차출퇴근형은 1일 8시간의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무시간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토요일은 휴무함이 원칙이며,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규정

선택형은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유연근무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비상근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9:00~18:00)로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지문인식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상남도 인사과에서는 2019. 7. 20. “2019년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계획 (인사과-19202호)”을 통보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유연근무자 대상자는 출퇴근시 반드시 초과지문인식기를 체크하고 부서별 유연근무 참여자에 대한 자체 복무관리 철저를 안내하였다.

따라서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유연근무제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는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유연근무제 운영실태를 주기적<sup>2)</sup>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수산안전기술원(마산지원, 거제지원)에서는 2018. 7. 9.부터 2022. 3. 3. 감사일 현재까지 부서직원 27명 총 439회<sup>3)</sup>의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등 유연근무를 승인처리 하면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출퇴근 관리 등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번 감사기간('22. 2. 24. ~ 3. 3.) 중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 등 4명은 유연근무를 승인받고도 지문인식시스템에 6회에서 최대 13회의 출·퇴근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실태를 점검하여야 함

3) 개인별 유연근무제 신청·승인 횟수를 말함

등록을 누락<sup>4)</sup>하였고, 그 중 ○○○의 경우 2019. 3. 21.과 같은 해 5. 14.에 8시 이전 유연근무 출근을 미등록하여 출근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정상 유연근무 (8시~17시)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초과근무 실시에 따른 수당 21,000원<sup>5)</sup>이 과지급 되었다.

[표] 유연근무자 출퇴근 미등록 등 부적정 현황

연번	소속	성명	직급	유형	유연근무 일자	승인시간	지문등록 시간	위반내용
1	거제 지원	○○○	○○○○ ○○○○○	시차 출퇴근형	'20-05-08	7:00-14:00	7:17~ -	퇴근 미등록
2	거제 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20-05-22	7:00-16:00	6:54~ -	퇴근 미등록
3	거제 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20-06-03	7:00-14:00	6:46~ -	퇴근 미등록
4	거제 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21-01-28	9:00-13:00	-	퇴근 미등록 (9시 출근)
5	거제 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21-02-19	9:00-16:00	-	퇴근 미등록 (9시 출근)
6	거제 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21-05-21	8:00-16:00	7:48~ -	퇴근 미등록
7	거제 지원	○○○	○○○○ ○○○○	시차 출퇴근형	'19-03-06	8:00-17:00	7:35~ -	퇴근 미등록
8	거제 지원	○○○	○○○○ ○○○○	시차 출퇴근형	'19-03-20	8:00-17:00	- ~17:02	출근 미등록
9	거제 지원	○○○	○○○○ ○○○○	시차 출퇴근형	'19-12-04	8:00-17:00	7:36~ -	퇴근 미등록
10	거제 지원	○○○	○○○○ ○○○○	시차 출퇴근형	'19-12-18	8:00-17:00	6:47~ -	퇴근 미등록
11	거제 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20-06-10	8:00-17:00	7:41~ -	퇴근 미등록
12	거제 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20-06-17	8:00-17:00	7:46~ -	퇴근 미등록
13	거제 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20-07-01	8:00-17:00	7:50~ -	퇴근 미등록
14	거제 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20-08-19	8:00-17:00	7:15~ -	퇴근 미등록
15	거제 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20-10-07	8:00-17:00	7:22~ -	퇴근 미등록
16	거제 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20-11-04	8:00-17:00	7:57~ -	퇴근 미등록
17	거제 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20-12-02	8:00-17:00	7:43~ -	퇴근 미등록

4) ○○○ 6회, ○○○ 11회, ○○○ 9회, ○○○ 13회

5) 유연근무시간은 8시부터 17시로 지정하여 18시 이후 근무한 시간이 초과근무 수당으로 인정되나, 8시 이전 출근 지문인식을 하지 않아 19시 이후 근무한 시간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2일(3.21., 5.14.) 각 1시간씩 2시간의 초과근무수당 과지급(시간당단가 10,509원)

연번	소속	성명	직급	유형	유연근무일자	승인시간	지문등록시간	위반내용
18	거제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19-04-17	8:00-17:00	7:48~ -	퇴근 미등록
19	거제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20-02-28	8:00-16:00	7:56~ -	퇴근 미등록
20	거제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20-03-27	8:00-17:00	7:50~ -	퇴근 미등록
21	거제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20-04-17	7:30-16:30	7:26~	퇴근 미등록
22	거제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20-04-29	8:00-17:00	7:54~	퇴근 미등록
23	거제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20-05-08	7:30-16:30	7:24~	퇴근 미등록
24	거제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20-08-06	7:30-16:30	7:26~	퇴근 미등록
25	거제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20-11-03	8:00-17:00	7:51~	퇴근 미등록
26	거제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20-12-11	8:00-17:00	7:53~	퇴근 미등록
27	거제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18-07-20	8:00-16:00	-	출퇴근 미등록
28	거제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18-07-25	8:00-17:00	-	출퇴근 미등록
29	거제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18-07-31	8:00-18:00	-	출퇴근 미등록
30	마산지원	○○○	○○○○○ ○○○	시차 출퇴근형	'19-03-21	8:00-17:00	- ~21:08	출근미등록 (1시간 초과수당 과지급)
31	마산지원	○○○	○○○○○ ○○○	시차 출퇴근형	'19-05-14	8:00-17:00	- ~20:49	
32	마산지원	○○○	○○○○○ ○○○	시차출 퇴근형	'19-05-22	8:00-17:00	7:54~ -	퇴근 미등록
33	마산지원	○○○	○○○○○ ○○○	시차 출퇴근형	'19-05-23	8:00-17:00	7:18~ -	퇴근 미등록
34	마산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19-06-13	8:00-17:00	7:36~ -	퇴근 미등록
35	마산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19-06-17	8:00-17:00	- ~ 17:08	출근 미등록
36	마산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19-06-18	8:00-17:00	7:47~ -	퇴근 미등록
37	마산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19-06-21	8:00-17:00	8:00~ -	퇴근 미등록
38	마산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19-07-19	8:00-17:00	8:00~ -	퇴근 미등록
39	마산지원	○○○	○○○○○ ○○○	근무시간 선택형	'19-07-24	8:00-17:00	7:55~ -	퇴근 미등록

[출처 : 수산안전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유연근무 대상자가 출퇴근 시간의 증빙을 위해 지문 인식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담당자 교육 및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유연근무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1조의2 및 제3조 등을 위반하여 유연근무 시 복무관리 시스템(지문인식)에 출·퇴근을 등록하지 않은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 지방○○○○○○○○○○○○○○○○(현 ○○○○○과),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 지방○○○○○○○○○○○○○○○○(현 ○○○○○과), 수산안전기술원 마산·거제지원 지방○○○○○○○○○○○○○○○○(현 ○○○○○과),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 지방○○○○○○○○○○○○○○○○(현 ○○○○○과)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② 수산안전기술원장은 복무관리시스템에 출근시간을 미등록 하였음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되어 과지급 된 초과근무 수당 21,000원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제 목 기술지도선 수리공사 등 하자검사 미이행

소 관 기 관 수산안전기술원

조 치 기 관 수산안전기술원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하자보수를 위해 하자보수 보증 증권을 징구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대상기간('18. 7. 9. ~ '22. 3. 3.) 기준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공사현황은 [표 1]과 같이 2018년 이전 14건, 2019년 17건, 2020년 11건, 2021년 19건 총 61건이다.

[표 1] 감사기간 기준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공사 현황1)

(2022. 3. 3. 기준)

공사건수	계	2018년이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61	14	17	11	19
본 원	11	1	1	2	7
마산지원	10	4	2	3	1
사천지원	8	1	1	-	6
거제지원	13	1	10	1	1
고성지원	7	2	1	2	2
남해지원	12	5	2	3	2

[출처 : 수산안전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1) 건당 5백만원 이상 공사 현황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수산안전기술원(지원포함)의 5백만원 이상 준공공사 중 감사대상기간('18. 7. 9. ~ '22. 3. 3.) 기준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61건에 대하여 하자 검사 실시 현황을 파악한 결과 [표 2]와 같이 정기검사 35건, 최종검사 16건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최종검사 없이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16건은 담보책임 이전에 발생한 하자라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를 요청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수산안전기술원(거제지원)에서는 지난 2018. 7월에 실시한 도 종합감사에서 하자검사 미이행으로 지적되어 재발 방지 '주의' 촉구한 바 있음에도, 2022. 3. 3. 감사일 현재까지도 동일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표 2]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공사 하자검사 실시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구 분	계		2018~2019		2020		2021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합계	정기검사	70	35	15	19	26	5	29	11
	최종검사	19	16	9	4	5	6	5	6
본원	정기검사	4	4	-	3	-	1	4	-
	최종검사	3	1	-	1	1	-	2	-
마산지원	정기검사	9	3	4	2	2	-	3	1
	최종검사	7	1	3	1	2	-	2	-
사천지원	정기검사	11	4	1	2	-	2	10	-
	최종검사	1	0	1	-	-	-	-	-
거제지원	정기검사	21	19	-	10	17	2	4	7
	최종검사	0	9	-	1	-	4	-	4
고성지원	정기검사	6	3	4	-	1	-	1	3
	최종검사	3	2	1	1	1	-	1	1
남해지원	정기검사	19	2	6	2	6	-	7	-
	최종검사	5	3	4	-	1	2	-	1

[출처 : 수산안전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공사별 하자검사 실시 세부현황(별첨) 참조

## 관계기관 의견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담당자 변경 및 신규 공무원 임용 후 하자검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사무인계 인수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담당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서의 관리담당(계약부서)의 총괄적인 관리 주도로 정기적인 하자 검사 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등을 위반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실무담당자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지방○○○○○○○○(현 ○○○○○○과), 실무담당자 수산안전기술원 거제지원 지방○○○○○○○○(현 지방○○○○○○○,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 ② 수산안전기술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공사별 하자검사 실시 세부현황

- 생략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관공선 관리운영 기준 미제정 및 의무검사비 지원 신청 누락

소 관 기 관 수산안전기술원

조 치 기 관 수산안전기술원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양식어장 예찰과 수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관공선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표 1] 관공선 관리·운영 현황

(단위 : 톤, 천원)

연번	선박명칭	선박종류	톤수	취득일	취득가액	비고
1	○○○21호	기타	22	2009.12.22.	597,653	본원
2	○○○호	기타	21	2004.11.30.	540,185	마산지원
3	○○호	어선	4.99	2019.2.7.	312,220	사천지원
4	○○○호	어선	14.0	2018.12.18.	149,530	거제지원
5	○○891호	어선	10.0	1997.2.25.	225,087	고성지원
6	○○21호	어선	14.0	2020.12.15.	470,000	남해지원

[출처 : 수산안전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관공선의 재해 또는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매년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표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기등록 공제회비 납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금액	납부일	금액	납부일	금액	납부일	금액	납부일
본원	33,479	18.3.21.	33,563	19.3.20.	15,592	20.3.20.	15,803	21.3.23.
마산지원	13,102	18.3.22.	13,152	19.3.27.	14,640	20.3.27.	14,743	21.3.22.
사천지원	-	-	2,863	19.3.26.	3,128	20.3.23.	3,068	21.3.30.
거제지원	2,956	18.3.23.	2,956	19.3.27.	2,956	20.3.31.	2,956	21.3.17.
고성지원	4,214	18.3.21.	4,247	19.3.29.	4,247	20.3.26.	4,055	21.3.24.
남해지원	7,891	18.3.27.	7,719	19.4.2.	7,719	20.3.27.	8,649	21.3.23.

[출처 : 수산안전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공선 관리·운영 기준 미제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관리규정」이 2008. 6. 5. 폐지되어 관공선에 대한 관리운영 기준의 부재로 안전행정부에서는 지자체 관공선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3. 11. 23.에 「지자체 관공선 관리·운영 기준」 마련 권고안을 통보하면서 관공선에 대한 안전수칙, 전문교육, 검사·점검 등 세부기준을 지자체 조례, 훈령 등으로 제·개정 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경상남도 회계과에서는 2013. 11. 26. 관공선 관리기준을 제정하도록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에 통보(회계과-14524호)하면서 관공선 관리운영 기준 제정 계획 및 추진일정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선박관리, 안전관리, 선박의 물품관리, 보험가입, 건조 및 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공선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관공선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2022. 3. 3. 감사일 현재까지 관공선의 관리계획, 안전관리, 정기점검 및 수리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관공선을 운항하고 있다.

### 3. 관공선 의무검사비 지원신청 누락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 기준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원지원사업운영규정」 제2조 및 「지방관공선 의무검사비지원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지방관공선의 의무검사비를 지원하되, 검사비에 대한 신청은 선박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여야 하고 법정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관공선 의무검사비지원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검사비 지원 대상은 지방관공선 중 검사일 이전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에 등록하고 회비를 납부한 선박으로 검사비는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전파법, 수상레저안전법, 어선법 등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로 발생하는 비용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상남도지부에서는 지방관공선 법정 의무검사 준수 등 선박 안전관리 이행 강화 및 실질적인 회원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수산안전기술원(본원)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발송<sup>1)</sup>하여 의무검사비 무상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였다.

따라서 수산안전기술원 관공선 관리담당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관공선 의무검사비 지원제도”를 각 지원에 통보하여 의무검사비 무상 지원을 안내하고, 각 지원 담당자는 의무검사를 수행하고 검사비를 지급한 경우 선박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의무검사비를 신청하여 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입조치 하여야 했다.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경상남도지부-859(2017.5.29.), 한국지방재정공제회경상남도지부-73(2019.1.11.), 한국지방재정공제회경상남도지부-486(2020.4.7.)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관공선 의무검사비 지원제도” 공문을 접수하고도 각 지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사천지원, 거제지원, 남해지원에서는 [표 3]과 같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총 13건의 관공선 의무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기관<sup>2)</sup>에 검사비를 지급하였으나, 9건 1,092,930원<sup>3)</sup>의 검사비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원 신청하지 않았다.

그 결과 8건 총 1,026,600원은 의무검사비 지원신청 기한이 경과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표 3] 관공선 의무검사 내역

(단위 : 원)

구분	선박명	검사일자	검사종류	검사비용	미청구 금액	관련법	비고
합계		13건(미청구 9건)		2,028,460	1,092,930		
사천 지원	소계	2건(미청구 2건)		113,330	113,330		
	〇〇호	'21. 1. 25.	무선국	47,000	47,000	전파법	청구기한 경과
	〇〇호	'22. 2. 21.	제1종 중간검사	66,330	66,330	선박안전법	시정 가능
거제 지원	소계	4건(미청구 4건)		774,600	774,600		
	〇〇〇호	'18. 5. 23.	정기검사	162,800	162,800	선박안전법	청구기한 경과
	〇〇〇호	'19. 1. 3.	무선국	65,000	65,000	전파법	청구기한 경과
	〇〇〇호	'20. 5. 11.	제1종 중간검사	481,800	481,800	선박안전법	청구기한 경과
	〇〇〇호	'20. 12. 23.	무선국	65,000	65,000	전파법	청구기한 경과
고성 지원	소계	4건(미청구 1건)		673,930	64,000		
	〇〇891호	'18. 2. 19.	무선국	64,000	64,000	전파법	청구기한 경과
	〇〇891호	'19. 6. 17.	정기검사	324,170	-	어선법	
	〇〇891호	'20. 6. 22	임시검사	210,760	-	어선법	
	〇〇891호	'20. 4. 9.	무선국	75,000	-	전파법	
남해 지원	소계	3건(미청구 2건)		466,600	141,000		
	〇〇21호	'18. 4. 26	무선국	65,000	65,000	전파법	청구기한 경과

2) (정기검사, 1,2종 중간검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무선국 검사) 부산전파관리소 등

3) 지원신청 하지 않은 9건 중 1건 66,330원(사천지원)은 지원 신청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지원 신청 가능

구분	선박명	검사일자	검사종류	검사비용	미청구 금액	관련법	비고
	○○21호	'19. 6. 26.	정기	325,600	-	어선법	
	○○21호	'20. 10. 7.	무선국	76,000	76,000	전파법	청구기한 경과

[출처 : 수산안전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지자체 관공선 관리·운영 기준」 제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및 업무담당자 변경으로 기준을 제정하지 못하였으며, 지방관공선 의무검사비 지원 신청 누락에 대하여도 담당자 업무 미숙과 사무 인계인수 부족으로 지원제도 안내 공문 통보 누락 및 검사비 신청 시기를 일실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수산안전기술원장은

① 관공선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선박관리, 안전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공선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② 신청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사천지원 관공선 의무검사비 66,300원은 「지방관공선의무검사비지원규칙」 제3조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조속히 지원 신청하여 세입조치 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시정 요구

제 목 도시민 ○○○○○○사업 수탁기관 지도·감독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수산안전기술원  
조 치 기 관 수산안전기술원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에 따라 [표 1]과 같이 경상남도 도시민 ○○○○지원 사업 운영사무를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경상남도 도시민 ○○○○○○사업 운영 위수탁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별	위탁사무	수탁기관	협약기간	위탁금
합 계		-	-	1,600,000
2018	-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정주관련 정보제공 - 어촌마을 주민 연계 사업 등	○○○○○○공단 (이사장 ○○○)	'18.2.28.~ '21.12.31.	400,000
2019				400,000
2020				400,000
2021				400,000

[출처 : 수산안전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 2. 위탁금 교부결정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도시민 ○○○○○○ 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신청·교부·집행·정산에 관한 사항과 협약에 적용되는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도시민○○○○○○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에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보조사업 예산의 법령과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예산의 법령과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금액산정에 착오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공단’에서 [표 2]와 같이 2018년과 2019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업항목별 산출기초를 기입하지 않았고, [표 3]과 같이 사업추진의 핵심내용인 직접사업비(사업 세부프로그램)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업별 금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등 조치 없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 400,000천 원을 각각 교부결정 처리하였다.

[표 2] 2018, 2019년 도시민 ○○○○○○사업 집행계획

(단위 : 천 원)

구분	항목		산출기초	산출금액	교부신청 접 수 일	교부결정일
합 계				800,000		
'18년	인건비	인건비	5명, 기준단가 2,111	85,600	'18.4.15.	'18.4.16.
		직접 사업비		유인물비		
	회의비			30,600		
	교육비			199,500		
	행사운영비			47,070		
	간접 경비	국내여비		2,300		
		전산처리비		900		
		교통통신비		900		
		사무실관리비		1,000		
		사무실운영비		1,000		
		임차료		5,000		
		자산취득비		3,000		
		사무용품비		300		
	일반 관리비	사무실관리비		10,000		
		사무실운영비		8,000		
		주차권구매비		2,000		
인건비		인건비	4명, 기준단가 2,111	85,600	'19.2.20.	'19.2.24.
직접 사업비	유인물비	2,675				
	회의비	100,325				
	교육비	77,500				
	행사운영비	99,500				
간접 경비	국내여비	2,300				
	전산처리비	900				
	교통통신비	900				
	사무실관리비	1,000				
	사무실운영비	1,000				
	임차료	5,000				
	자산취득비	1,500				
	업무추진비	1,500				
일반 관리비	사무용품비	300				
	사무실관리비	10,000				
	사무실운영비	8,000				
	주차권구매비	2,000				

[출처 : 수산안전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2018, 2019년 도시민 ○○○○○○사업 세부프로그램 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세부사업	산출기초	산출금액
합계	20개 사업	-	560,000
'18년	9개 사업		280,000
	귀어인 정주 관련 정보제공	산출기초 없음 (통합예산 편성)	10,000
	어촌유치를 위한 홍보		
	이론교육	산출기초 없음	50,000
	귀어인 대상 홍보		30,000
	체험교육		75,000
	마을주민 행사의 밤		20,000

구분	세부사업	산출기초	산출금액
	컨설팅 수행		75,000
	교류 활성화 지원		10,000
	귀어귀촌인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10,000
'19년	<b>11개 사업</b>	-	<b>280,000</b>
	예비 귀어귀촌인 정보제공	산출기초 없음 (통합예산 편성)	70,000
	어촌유치를 위한 홍보		
	어촌유치 활성화 워크숍		
	전문상담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콜센터 운영		
	이론교육	산출기초 없음	40,000
	현장실습		40,000
	어촌체험		50,000
	주민과 함께하는 환영행사		20,000
	컨설팅 지원		40,000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운영 지원		10,000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10,000

[출처 : 수산안전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 3.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미실시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6조,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도시민 ○○○○○○ 사업 세부시행지침」(해양수산부) '이행점검단계'에 따르면 시도는 자체 '도시민 ○○○○○○ 시행계획'에 따라 마을, 지역단체, 교육 기관 등의 역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시행하여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취지와 부합 여부,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와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등을 지원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수탁기관인 ‘공단’에서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사업이 목적과 시행계획대로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2018년과 2019년 도시민 ○○○○○○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단’에서 사업 시행계획대로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 차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수탁기관인 ‘공단’에서는 2018년 ‘어촌 정착 환영의 날 행사(4회)’ 등 2개 사업과, 2019년 ‘현장실습’ 등 4개 사업 총 6개의 세부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 4] 세부사업 미실시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비고
합계	6개 사업		104,000	
2018	어촌정착 환영의 날 행사	4회	20,000	2019. 2월말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도 미실시
	귀어귀촌인 지역사회활성화 지원	2개소	10,000	
2019	현장실습	100명	40,000	미실시
	가족 환영행사	3개 권역	20,000	
	네트워크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5개소	10,000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5개소	4,000	

[출처 : 수산안전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 4. 위탁금 정산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9조,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이자 및 수익금은 반납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Ⅲ.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에 따르면 사업부서에서 정산 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보조금 사용방식은 전용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하되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 제5조(불인정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지출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등은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보조사업 정산 시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보조금이 당초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조사·검토하여야 하고, 법정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법령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1) 사업내용 변경승인 없이 임의 추진

그런데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공단’에서 제출한 2019년 도시민 ○○○○○○사업 세부 계획서 상 귀어희망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및 사업 안내(설명)를 위해 ‘정부·지자체 퇴직공무원’ 또는 ‘귀어·귀촌전문가’를 채용하여 ‘귀어·귀촌 전문 상담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콜센터’(신규사업)를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귀어·귀촌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비·용역’ 전문업체인 ‘○○○주식회사’와 귀어귀촌 콜센터 운영 용역계약(13,678천 원, 기간 ‘21. 7. 24. ~ 12. 20.’)을 체결하고 실제 업무내용도 ‘공단’ 내 경남어촌특화지원 센터업무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여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감사기간(‘22. 2. 24. ~ 3. 3.)동안 귀어귀촌 콜센터 상담인력의 이력과 업무 수행 내용을 점검한 결과 귀어·귀촌을 상담할만 한 전문자격이 없으며, 실제 상담 실적은 5개월 간 204건(1일 2건)에 불과하고 주로 경남어촌특화지원 센터의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공단’에서 [표 5]와 같이 2019년 ○○○○○○○○을 추진하면서 세부프로그램에도 없는 ‘2019년 귀어귀촌 박람회 참가’와 ‘2019년 가리비 축제 참가’ 경비 등으로 21,070천 원을 집행하였음에도 정산 시 해당내용에 대한 확인 및 시정 등 조치 없이 정산을 확정하였다.

[표 5] 변경승인 없이 프로그램비 신설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연도별	지출항목	집행금액	비 고
합 계		21,070	
2019	2019년 귀어귀촌 박람회 참가	14,261	사업계획 미포함
	2019년 가리비축제 참여	6,809	사업계획 미포함

[출처 : 수산안전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 2) 타 보조사업 인건비 지원 종사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부적정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공단’에서 2018년 어촌체험·현장실습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2018년 ○○○○○○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 등 2명의 ○○○○○○ 사무장1(이하 사무장)이 어촌체험마을에서 실습생들에게 어촌체험활동을 지도·감독 하는 등의 사무장으로서의 지정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유로 [표 6]과 같이 보조금 2,800천 원을 사례금으로 추가 지급하였음에도 2020. 3. 31. 정산검사<sup>2)</sup> 시 이에 대한 확인 및 시정 등의 조치 없이 정산을 확정하였다.

[표 6] ○○○○○○ 사무장에 대한 사례금 지급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성 명	소 속	지급적요	기간	지급금액
합 계		2건		-	2,800
2018년	○○○	○○마을 사무장	어촌체험·실습관리·감독비	‘18. 11. 19~11. 23. ‘18. 11. 26~11. 30.	1,800
	○○○	○○마을 사무장		‘18. 11. 26 ~11. 30.	1,000

[출처 : 수산안전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 3) 법정 증빙서류 미 구비에도 보완 없이 정산처리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표 7]과 같이 ‘공단’에서 2018년과 2019년 도시민 ○○○○○ 추진 정산 증빙서류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거래처로부터 지출 증빙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간이(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총 7건, 11,281천

1) 인건비(‘18년 기준) : 월 158만 원(국·도·시비), 주요업무 : 어촌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어촌체험 활동 홍보안내지도, 행사기획, 고객관리, 주민교육 등 필요한 사항, 기타 어촌체험마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등  
2) 2018, 2019년 정산검사를 동일날짜에 실시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2020. 3. 31. 정산검사 시 증빙서류 보완 등의 시정 조치 없이 정산을 확정하였다.

[표 7] 간이세금계산서 첨부 지출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연도별	지출건명	지출처	지출일자	지출금액	위반내용
합 계		7건	-	11,281	
'18년	어촌정착 이론교육 책자 제작	○○○○○○	'18.8.29	660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계산서 첨부
	어촌정착이론교육 2기 책자 제작	○○○○○○	'18.10.15.	825	
	어촌유치 활성화 워크숍 책자 제작	○○○○○○	'18.12.30.	808	
'19년	어촌정착 이론교육 책자 제작	○○○○○○	'19.7.12.	1,500	
	제2기 귀어귀촌과정 이론과정 숙박비	○○○○	'19.8.23.	5,000	
	제2기 귀어귀촌과정 이론교육 책자제작	○○○○○○	'19.11.29	1,520	
	어촌유치 활성화 워크숍 책자 제작	○○○○○○	'19.11.29	968	

[출처 : 수산안전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 4)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및 이자발생액 미반납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표 8]과 같이 도시민 ○○○○○○사업 종사자로 근무한 ○○○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급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어 '공단'에서 보관중인 보조금으로 적립된 퇴직적립금 1,131천 원은 반납받아야 함에도 2022. 3. 3.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 받지 않고 있다.

[표 8] 1년 미만 인건비 지원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내역

(단위 : 천 원)

종사자	근무기간	퇴직금 적립액	반납대상액
○○○	'20. 4. 13. ~ '21. 3. 18.	1,131	1,131

[출처 : 수산안전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이자액은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이자를 반납받아야 함에도 [표 9]와 같이 2018년과 2019년 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등 반납절차를 지연 처리함으로써 반납고지일 전까지 추가로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발생액 213,420원을 반납 받지 않았다.

[표 9] 이자발생액 미반납 현황

(단위 : 원)

구분	반납고지일	계	국비	도비
합계		213,420	95,500	117,920
2018	'21.5.24.	123,150	52,180	70,970
2019		90,270	43,320	46,950

[출처 : 수산안전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법령과 신규위탁사업에 대한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업무처리에 미숙함이 있었으며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이행 여부 및 지속적인 성과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한편 '○○○○○○ 사무장'에 대해 센터에서 진행하는 어촌체험활동 및 실습 관리·감독비를 지출한 건에 대하여 당일 관광객들을 목적으로 실시한 체험활동이 아니며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5일 이상의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토대로 운영하였으며 귀어 희망자에 업종별 맞춤형 교육 이행 및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기에 보조금을 지출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귀어 희망자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은 교육과정별로 어업종사자들이 직접 수행하여 현장교육에 대한 대가로 일일 20만 원의 인건비가 별도 지출된 것이 확인되며,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 사무장의 고유업무 영역이라 할 수 있고 교육 또한 ○○○○○○ 사무장들의 근무시간(평일 09:00~18:00) 안에 이루어져 별도 인건비를 지급할 마땅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답변은 인정할 수가 없다.

## 조치할 사항

① 「도시민 ○○○○○○○○ 위수탁 협약서」 제6조 및 제1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9조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및 보조사업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지방○○○○○○ ○○○(현 ○○○○과 휴직)**를 「경상남도 행정감사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합니다.(훈계)

② 수산안전기술원장은 수탁기관인 ‘○○○○공단’에서 반납하지 않은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1,131천 원, 위탁금 집행잔액 213천 원, 총 **1,344천 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라 반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제 목 지출원 부재 중 회계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수산안전기술원

조 치 기 관 수산안전기술원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수산안전기술원 및 5개 지원<sup>1)</sup>(이하 ‘지원’ 이라 한다)에서는 「지방회계법」 제10조 및 「경상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업무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수산안전기술원 및 지원 회계관직 지정 현황

구분	재무관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수산안전기술원	원장	관리담당	회계담당자
마산지원	지원장	관리담당	기술개발담당
사천지원	지원장	관리담당	기술개발담당
거제지원	지원장	관리담당	기술개발담당
고성지원	지원장	관리담당	기술개발담당
남해지원	지원장	관리담당	기술개발담당

[출처 : 수산안전기술원 및 지원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기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마산지원, 사천지원, 거제지원, 고성지원, 남해지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실 및 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 직원 중 최상급자, 분장사무 중 사무분야 담당 순위에 의한 사무관의 순으로 대리하며,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 및 제118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그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수산안전기술원 및 지원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출업무를 대리할 회계관계직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지 않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고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수산안전기술원 및 지원에서는 2018. 7. 9.부터 2022. 3. 3. 감사일 현재 까지 [표 2]와 같이 지출원이 휴가 등으로 부재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회계담당자가 지출원의 구두승인 및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지급명령을 이행하거나, 회계관계공무원이 아닌 권한 없는 직원의 대리 결재를 받아 총 299건, 610,639천 원을 집행하였다.



(현 지방○○○○○○○○, ○○○○장), 수산안전기술원 남해지원 지방○○○○○○○○(현 ○○○○○○○○○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② 수산안전기술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별첨]

지출원 부재 중 지출현황

<생략>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시정 요구

제 목 공무상 출장여비 및 급량비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수산안전기술원

조 치 기 관 수산안전기술원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수산안전기술원 및 5개 지원<sup>1)</sup>(이하 ‘지원’ 이라 한다)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등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당면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근무시간 시작 전이나 종료 후 실시한 시간외 근무자에게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 2.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등으로 구분하고 같은 규정 제8조의2에서 국내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마산지원, 사천지원, 거제지원, 고성지원, 남해지원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일비는 [별표 2]에 따라 1일당 2만 원을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 출장시 여비는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sup>2)</sup>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상 출장한 공무원은 관내출장 정산신청 시 출장한 시간에 따라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이거나 관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일비를 감액하여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비·운임비·숙박비 등에 대한 여비를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수산안전기술원 및 지원에서는 2018. 7. 9.부터 2022. 3. 3. 감사일 현재까지 관내출장 여비를 지급하면서 [표 1]과 같이 4시간 이상 관내출장 승인 후 실제 4시간 이내에 출장을 완료한 경우와,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수행한 경우에는 일비를 1만원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전액 지급하여 총 308건, 3,080천 원의 일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 1]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 건, 원)

구분	합계		4시간 미만 출장에 일비 과지급		관용차 이용 일비 과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08	3,080,000	300	3,000,000	8	80,000
본원	93	930,000	92	920,000	1	10,000
마산지원	59	590,000	56	560,000	3	30,000

2)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여비 구분없이 정액으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을 지급하나 실무상 관내출장 여비 지급 시 일비로 지급함.

구분	합계		4시간 미만 출장에 일비 과지급		관용차 이용 일비 과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천지원	65	650,000	63	630,000	2	20,000
거제지원	78	780,000	77	770,000	1	10,000
고성지원	2	20,000	2	20,000	-	-
남해지원	11	110,000	10	100,000	1	10,000

[출처 : 수산안전기술원 및 지원 제출자료 재구성]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현황 [별첨1]

### 3. 급량비 지급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에게 일비·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 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1식 급식단가를 8,000원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추진비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안전기술원 및 지원에서는 정규 근무 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등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급할 경우 출장여비로 식비를 지급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중복으로 급식비를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수산안전기술원 및 지원에서는 [표 2]와 같이 2018. 7. 9.부터 2022. 3. 3.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직원에 대한 급식비를 지급하면서 출장비로 식비 20,000원을 지급 받아 초과근무에 따른 급식비(급량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총 163건, 1,304천 원을 중복하여 지급하였다.

[표 2] 출장여비와 급식비 중복지급 현황

(단위 : 건/ 원)

구분	합계		2019년		2020		2021	
	건수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163	1,304,000	35	280,000	12	96,000	116	928,000
수산안전기술원	1	8,000	1	8,000				
마산지원	67	536,000					67	536,000
사천지원	8	64,000	8	64,000				
거제지원	58	464,000	1	8,000	11	88,000	46	368,000
고성지원	8	64,000	5	40,000			3	24,000
남해지원	21	168,000	20	160,000	1	8,000		

[출처 : 수산안전기술원 및 지원 제출자료 재구성] 급량비 부적정 지급 현황 [별첨2] 참조

### 관계기관 의견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행정업무 경험 부족 및 관련규정 미숙지로 업무처리에 부족함이 있었으며, 앞으로 업무담당자 교육 및 업무연찬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출장여비 및 급량비 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수산안전기술원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을 위반하여 과다 지급된 출장여비 3,080천 원과 중복 지급된 급량비 1,304천 원, 총 4,384천 원을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별첨 1]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현황**  
**<생략>**

[별첨 2]

**급량비 부적정 지급 현황**  
**<생략>**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 ○○○○ ○○○○○○ 정비공사 등 준공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도로관리사업소

조 치 기 관 도로관리사업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도로관리사업소는 [표 1]과 같이 ○○○○○○ ○○○○ ○○○○○○ 정비공사(1차분) (이하 '정비공사'라 한다) 등 5건의 공사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 등을 [표 2]와 같은 준공정산 절차에 따라 지급하였다.

[표 1] 단장1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등 5건

연 번	공 사 명	공사기간	공사내용	도급금액	도 급 자
1	○○○○○○○ ○○○○○○○ 정비공사(1차분)	'20. 7. 13. ~ '21. 12. 22.	붕괴위험지역정비 L=1.24km	2,589,734천 원	(주)○○○○○ (김해시 소재)
2	○○○○○○○ ○○○○○○○ 정비공사(2018년)	'18. 3. 28. ~ '18. 10. 11.	붕괴위험지역정비 1식	472,515천 원	○○○○○○○(주) (산청군 소재)
3	○○ ○○○○○○ 건설공사(2019년분)	'19. 3. 22. ~ '20. 9. 14.	도로확포장 L=2.078km, B=8.0m	245,910천 원	○○○○○(주) (창원시 소재)
4	○○ ○○○○○○ 건설공사(2020년분)	'20. 7. 31. ~ '21. 8. 06.	도로확포장 L=2.078km, B=8.0m	995,560천 원	○○○○○(주) (창원시 소재)
5	○○ ○○○○○○ ○○○○○ 정비공사	'18. 5. 18. ~ '18. 12. 12.	위험절개지 정비 L=111m	757,320천 원	○○○○○○○(주) (진주시 소재)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건설공사 준공 정산 절차

순 서	절 차	주 요 내 용
① 정산서류 제출	도급자→사업부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보험료 등 도급자가 실제 사용한 실적 제출
② 정산서류 확인	사업부서	도급자가 발주청에 정산을 위해 제출한 사용실적 확인
③ 도급계약 변경	도급자↔계약부서	도급금액에 계상된 정산 항목 중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후 변경계약 체결
④ 대가지급	계약부서→도급자	정산 및 준공검사 후 도급금액 대가지급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해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위 기준 제8조에 따라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sup>1)</sup>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하며, 같은 법 제91조(과태료)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4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1) 국토교통부령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환경관리비 산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절차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정비공사에 대하여 준공정산할 때에는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서류를 확인해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불가내역이 있는 경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환경관리비는 간접공사비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도급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만 반영해 정산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정비공사 5건에 대해 준공정산하면서 안전관리비와 환경관리비의 인건비는 도급자가 매월 도로관리사업소에 청구해 이미 지급받은 동일시기 동일인물의 보통인부 등 직접 노무비 지급명세서<sup>2)</sup>를 수정해 다시 첨부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40,174천 원을 이중 청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였고, ○○○○○○ ○○○○ ○○○○○○ 정비공사(1차분)의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만 반영해 정산해야하는데도 개인 부담금 995천 원을 포함하여 [표 3]과 같이 도급자에게 총 41,169천 원을 2021. 12. 22. 등에 지급하였다.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표 4]와 같이 도급자에게 지급한 위 41,169천 원 중 안전관리비 22,295천 원은 2021. 3. 23. 감사일 현재까지 도급자에게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2) 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7.에 근거하고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435호 (‘12. 5. 9.)] 따라 도급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직접 노무비의 청구 및 지급을 위해 제출한 자료임.

실무요령에 따라 도급자의 노무비 청구는 도급내역서 및 공종별 산출근거에 반영된 직접 노무비(보통인부, 특별인부, 비계공 등)만 청구해야하고 발주청은 청구내용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한다.

[표 3] 준공정산 시 도급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

연번	공사명	정산시점	정산분야	위법부당한 사항	도급자 지급비용
	합 계				<b>41,169천 원</b>
1	○○○○○○○ ○○○○○○ 정비공사(1차분)	'21. 12. 22.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인건비 이중 지급	11,969천 원 (보험료 995천 원 포함)
			보 험 료	보험료 개인부담금 청구	
2	○○○○○○○ ○○○○○○ 정비공사(2018년)	'18. 10. 11.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인건비 이중 지급	9,689천 원
3	○○ ○○○○○○ 건설공사(2019년분)	'20. 9. 14.	환경관리비	인건비 이중 지급	1,720천 원
4	○○ ○○○○○○ 건설공사(2020년분)	'21. 8. 6.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인건비 이중 지급	10,277천 원
5	○○ ○○○○○○ ○○○○○ 정비공사	'18. 12. 12.	안전관리비	인건비 이중 지급	7,514천 원

※ 도급자 부적정 지급액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할증 비율을 반영한 것임

※ 준공정산 시 부적정 지급 세부내역 [별첨 1] 참고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준공정산 시 도급자에게 안전관리비 부적정 지급 금액

연번	공사명	정산분야	위법부당한 사항	도급자 지급비용
	합 계			<b>22,295천 원</b>
1	○○○○○○○ ○○○○○○ 정비공사(1차분)	안전관리비	인건비 이중 지급	4,536천 원
2	○○○○○○○ ○○○○○○ 정비공사(2018년)	안전관리비	인건비 이중 지급	6,250천 원
3	○○ ○○○○○○ 건설공사(2020년분)	안전관리비	인건비 이중 지급	3,995천 원
4	○○ ○○○○○○ ○○○○○ 정비공사	안전관리비	인건비 이중 지급	7,514천 원

※ 도급자 부적정 지급액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할증 비율을 반영한 것임

※ 준공정산 시 안전관리비 부적정 지급 세부내역 [별첨 2] 참고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경험 부족 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향후 준공정산 시 안전관리비와 환경관리비 등 사용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3항 등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관리비 등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구·○○○○지구 공사의 준공정산 실무담당자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 지방○○○○○ ○○○(현 지방○○○○ ○○○○회), ○○○○○○ ○○(2020년분) 공사의 준공정산 실무담당자 지방○○○○○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 도로관리사업소장은

-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를 위반하여 도급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295천 원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회수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을 위반하여 도급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환경관리비와 보험료 합계 18,874천 원의 회수방안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도급자 제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첨 1] 준공정산 시 부적정 지급 세부내역

- 생략 -

[별첨 2] 준공정산 시 안전관리비 부적정 지급 세부내역

- 생략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요구

제 목 건설공사 선급금 배분 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도로관리사업소

조 치 기 관 도로관리사업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포함, 이하 같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 등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수급인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였는지 관리·감독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4항에 따르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1절 통칙, 5. 선금의 사용과 정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 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원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2018. 3. 19.부터 2022. 3. 23. 감사일 현재까지 총 72건(본소 53건, 지소 19건)의 공사에 대해 총 7,338,951천 원의 선급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표 1]과 같이 ‘○○○ 보수공사’ 등 총 891,970천 원의 선급금이 지급된 8건(본소 6건, 지소 2건)의 공사의 경우 짧게는 3일부터 길게는 63일간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배분이 지연되었으며, [표 2]와 같이 ‘○○○ 내진보강공사’ 등 10건(본소 8건, 지소 2건)의 공사의 경우 총 712,388천 원의 선급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선급금 배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1] 선급금 배분 지연 내역(8건)

(단위:천원)

구분	공사명	공사금액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계약일	선급금 지급현황 (발주자→수급인)		선급금 배분현황 (수급인→하수급인)			선급금 배분 지연 일수
						지급일	금액	정 당 배분일	실 제 배분일	금액	
본소		97,700	○○○	○○○	'19.5.13	'19.5.22	20,000	'19.6.6	'19.6.18	8,160	12일
		108,310	○○○	○○○	'19.5.24	'19.5.23	29,700	19.6.8	19.6.17	2,970	9일
		702,043	○○○	○○○	'19.7.9	'19.6.28	258,300	19.7.24	19.7.31	23,421	7일
		337,915	○○○	○○○	'21.6.2	21.5.27	125,000	21.6.17	21.6.25	88,687	8일
		390,765	○○○	○○○	'21.9.7	'21.9.13	174,900	'21.9.28	'21.11.30	20,000	63일
		225,417	○○○	○○○	'21.10.22	'21.10.22	92,070	'21.11.6.	'21.11.17.	11,000	11일

구분	공사명	공사금액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계약일	선급금 지급현황 (발주자→수급인)		선급금 배분현황 (수급인→하수급인)			선급금 배분 지연 일수
						지급일	금액	정 당 배분일	실 제 배분일	금액	
	소계(6건)	1,862,150	-	-	-	-	699,970	-	-	154,238	-
지소		353,814	○○○	○○○	'18.6.14	'18.6.22	152,000	'18.7.7	'18.7.16	25,500	9일
		77,140	○○○	○○○	'20.7.10	'20.6.24	40,000	'20.7.9	'20.7.27	11,000	3일
	소계(2건)	430,954	-	-	-	-	192,000	-	-	36,500	-
합계(8건)		2,299,104	-	-	-	-	891,970	-	-	190,738	-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선급금 배분 여부 미확인 내역(10건)

(단위:천원)

구분	공사명	공사금액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계약일	선급금 지급현황 (발주자→수급인)		부적정 내용
						지급일	금액	
본소		135,058	○○○	○○○	'18.6.21.	'18.6.26	42,350	선급금 배부여부 미확인
		135,255	○○○	○○○	'18.7.2.	'18.6.22	16,000	
		41,147	○○○	○○○	'18.7.24.	'18.6.25	13,400	
		354,801	○○○	○○○	'18.11.22.	'18.11.14	136,000	
		232,320	○○○	○○○	'20.8.13.	'19.6.24	147,840	
		178,660	○○○	○○○	'20.9.24.	'20.6.30	70,973	
		777,710	○○○	○○○	'21.8.19.	'21.3.26	220,000	
		119,827	○○○	○○○	'21.11.23.	'21.9.17	33,825	
	소계(8건)	1,974,778	-	-	-	-	680,388	
지소		124,864	○○○	○○○	'18.7.13	'18.6.12	20,000	
		13,053	○○○	○○○	'19.7.3	'19.6.27	12,000	
	소계(2건)	137,917	-	-	-	-	32,000	
합계(10건)		2,112,695	-	-	-	-	712,388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업무처리에 미숙함이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인사이동 시 담당자 간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 등을 위반하여 건설공사 선금금 배분 관리·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 ○○○○○○○ ○○○(현 소통기획관), ○○○○○○○ ○○○(현 ○○○○○), ○○○○○○○ ○○○(현 ○○○○○), 진주지소 ○○○○○○○ ○○○(현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 ②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요구

제 목 고정검문소 차량 운행제한 단속업무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도로관리사업소

조 치 기 관 도로관리사업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에 대한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7조 및 「경상남도 지방도 등 유지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표 1]과 같이 단속반을 편성하여 차량 운행 제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운행제한차량 단속반 현황('22. 3. 23. 감사일 기준)

구분	단속반	운영인력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공무원 (단속반장)	공무직 (단속원)	
고정검문소 (7명)	1개소	3명	4명	○ ○○○○○ 상시 단속 - 월~목 - 금, 토 ○ 1개조 3명(반장 1, 단속원 2) - 반 장(3교대) - 단속원(2교대)
이동단속반 (14명)	3개반	3명	11명	○ 이동단속반 주·야간 단속 - 주간/ 야간, 주1회 ○ 1개반 4~5명(반장 1, 단속원 3~4명)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기준)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sup>1)</sup>(국토교통부훈령 제1214호, 2019. 7. 29.) 제4조에 따르면 소장의 임무는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검문소 및 단속장비의 설치, 검문소 및 단속반의 운영 계획 수립·관리, 단속반 편성·반장 임명 등 사항 조치와 시설·인력에 대한 관리, 단속장비 유지관리 업무 총괄, 단속인력의 복무 관리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전결 처리규정」 제3조에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고, 다만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에 따라 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가 전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 전결처리사항에 따르면 운행제한차량 검문소의 근무계획 및 근무상황보고, 이동·야간단속 월별계획,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복무관리, 검문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등 업무는 담당자가 기안하고 과장이 전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검문소 및 단속반의 운영과 단속장비 점검 및 기록 유지 등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정검문소의 단속장비 교체로 인한 장기간 단속 중단 등 이례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문서로 소장의 방침 결재를 받아 단속반 운영과 인력활용에 대한 근무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차량 운행 제한 단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구 「경상남도 지방도 유지·관리규정」(2020. 3. 5. 훈령 제1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에 차량운행 제한 조치는 도지사가 수행하며 '운행제한차량' 단속은 국토해양부 훈령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음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2000. 0. 0.부터 같은 해 0. 0.까지 00000 고정식 축중기시스템 교체공사<sup>2)</sup>(이하 ‘축중기시스템 교체공사’로 한다)로 인해 운행제한 차량 단속업무를 2개월(2000. 0. 0. ~ 0. 0.) 간 실시하지 못하는 중요하고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도로관리사업소 000에서는 이동식축중기<sup>3)</sup>를 활용한 대체단속 방안 및 이동단속반 인력 지원 등의 대안을 검토하여 공식적인 문서로 소장의 방침결재를 받아 단속반 운영과 인력활용에 대한 근무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소장의 방침결재도 받지 아니하고 [표 2]와 같이 단속원 7명(반장 3명, 공무원 4명)에게 2개월간의 단속 중단에 따른 어떠한 임무도 부여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단속근무 상황과 동일하게 단속반 및 근무형태를 운영하였다.

[표 2] 부곡 00000 과적단속 업무 부적정 현황

장소	과적단속 중단기간	단속반 및 근무 형태	비고
00 고정검문소 (지방도 0000호선)	2000. 0. 0. ~ 0. 0., 2개월 (사유 : 고정식 축중기시스템 공사, 2000. 0. 0. ~ 0. 0.)	- 반 장(공무원) : 3명 - 단속원(공무직) : 4명 - 단속방법 : 생략	
차량 운행제한 단속업무 부적정 사항		- 고정검문소 운행제한 단속 중단(2개월)의 이례적이고 중요한 사항 발생에도 소장의 방침결재 없이 단속반 근무변경 계획 및 대체 업무방안 미수립 - 근무일지에는 단속원 7명이 정상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단속실적(검차, 적발, 재검측 등) 및 기타 업무 추진 현황 기록 없음 - 대체업무 미지정에도 정상적인 단속업무 추진과 동일하게 반장 및 단속원의 8~9월 초과·야간 수당 등 18백만원 지급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2) 도로관리사업소 000-12039(2000. 0.0.)호에 따르면 00 검문소 고정식 축중기시스템 장비의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발생으로 검차 및 적발실적 지속 감소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00검문소 고정식 축중기시스템 교체 계획 수립(예산 331,100천 원)  
3) 2022. 1. 12. 바인더 자료에 2000. 0월 당시 예비용 이동축중기는 5대로 확인됨

또한 이번 감사기간 중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00. 0. 0.부터 2000. 0. 0.까지 차량 검측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축중기시스템 교체 공사를 실시하면서 기존시스템에 자동 저장<sup>4)</sup>되어 있는 차량 제원 측정 결과를 보관하지 않아 2000. 0. 0.부터 2000. 0. 0.까지의 검측 자료를 2022. 3. 23.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등 단속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본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무원의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시각 차이 등 현장의 여건과 장비 관리 미흡 등에 있으며, 00검문소 단속업무 2개월 중단에도 근무계획 변경없이 기존 체계대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선택한 최선이었음을 감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검측장비의 교체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에 단속원들의 사전 협의를 통해 근무계획 조정, 효율적 인력배분 방안 강구로 단속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정식 단속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담당자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단속업무 2개월 중단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대안 마련을 위한 방침(결재)을 만들지 않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공무원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단속요원 7명에게 대체 업무부여 없이 주·야간·휴일 정상 교대근무하게 하여 초과·야간 수당 등으로 18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점이 인정된다.

4)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0조 제6항에 검문소에서 운행제한 위반을 검사·단속하기 위해 수행한 모든 차량제원 측정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현황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차량제원 측정결과를 자동 저장·출력할 수 있는 고정 검문소의 경우에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단속 결과만을 기재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고정검문소에서는 시스템 교체 시 기존 차량제원 측정결과가 자동 저장된 자료를 별도 보관하여야 함

또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단속 점검기록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축중기시스템 교체공사 과정에서 기존시스템에 자동 저장되어 있는 차량제원 측정결과를 보관(백업)하지 않는 등 단속장비 유지관리 업무의 부주의가 인정된다.

## 조치할 사항

- ①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4조 및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전결 처리 규정」 제3조 등을 위반하여 고정검문소 차량 운행제한 단속업무 운영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감독책임자 도로관리사업소 ○○○ 지방○○○ ○○○(현 ○○○○○)와 실무책임자 지방○○○ ○○○(현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합니다.(훈계)
- ②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요구

제 목 관급자재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도로관리사업소

조 치 기 관 도로관리사업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2018. 1. 1.부터 2022. 3.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 내진 보강공사 등 1,173건의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의 방법 등으로 3,065회에 걸쳐 총 72,679백만원 집행하여 구매하였다

[표 1] 각종 공사 관급자재 구매 구매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공사명	구매 건	주요품명	집행금액
계	1,173	3,065		72,679
2018	○○○ 내진보강공사 등 296	707	교량받침 등	18,210
2019	○○○○ 포장도 보수공사 등 303	908	아스콘 등	20,468
2020	○○ ○○○○ 외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등 280	727	낙석방지망 등	17,117
2021	○○○○ 1개교 보수공사 등 255	633	GMA방수 아스팔트 등	14,814
2022	○○ ○○○○ 외 1개소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등 39	90	낙석방지망 등	2,070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계약 체결함에 있어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이하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5인 이상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 경쟁에 참여하도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 요청(이하 ‘2단계 경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업무처리기준 제5조 제1항에서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1억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sup>1)</sup>고 규정하고 있다.

---

1)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해당 납품요구건과 이전 납품요구건의 예산 비목(통계목 이상)이 상이하거나 예산회계연도가 달라 한번에 예산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업무처리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제안을 요청받은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을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 이하로 제한하여야 하고, 등록된 계약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할인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 경쟁 제품으로서 세부품명이 동일한 1억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공정성 확보와 업체간 가격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매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구매하지 않고 2단계 경쟁을 실시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2018. 3. 19.부터 2022. 3.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세부품명이 동일하고 계약시기가 비슷(0일~6일)하여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원 이상으로 2단계 경쟁대상이 되는 15건의 구매계약을 각 1억원 미만인 51건으로 분할 구매함으로써 최대 202백만원 상당의 예산절감<sup>2)</sup>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표 2]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대상 분할구매 부적정 현황

구분	구매자재	공사명	계약일자	계약금액(천원)	납품업체
합계		2단계 경쟁 대상 15건 분할구매 51건		2,069,219	
본소	가드레일 (3012179301)		'19. 6. 20. '19. 6. 24.	141,352	
			'19. 6. 20.	124,803	
			'20. 10. 19.	116,830	
			'20. 12.18. '20. 12. 21.	125,020	

2) 업무처리기준 제10조에 따라 2단계 경쟁을 통해 구매비용 최대 10%까지 절감이 가능한데도 구매시기, 동일제품 등 검토를 하지 않아 1억원 미만으로 각각 분할하여 구매(2,064,456천원)함에 따라 최대 202,153천원(10%할인 적용시 206,921천원 - 실제 구매금액 할인가격 4,768천원) 예산절감 기회 상실

구분	구매자재	공사명	계약일자	계약금액(천원)	납품업체	
	낙석방지책(망) (3012178801)		'21. 4. 11. '21. 4. 13.	132,754		
			'21. 7. 15. '21. 7. 21.	103,750		
	교량받침 (3012171601)		'18. 5. 15. '18. 5. 17.	101,790		
	교량이음장치 (3012171501)		'19. 4. 4.	151,778		
	교량난간 (3012170301)		'19. 10. 23. '19. 10.29.	107,328		
진주 지소			'18. 4. 30.	201,855		
			'19. 4. 18. '19. 4. 24.	165,054		
			'19. 5. 2.	172,298		
			'21. 5. 10. '21. 5. 11.	192,921		
	낙석방지책(망) (3012178801)			'18. 8. 8. '18. 8. 10.	127,377	
				'20. 12. 28. '20. 12. 30.	104,309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대상 분할구매 부적정 세부현황 별첨

## 관계기관 의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사업부서의 발주계획과 물품 구매 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가능한 2단계 경쟁을 통해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업무담당자의 관련 규정 숙지와 업무 연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을 위반하여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실무담당자 도로관리사업소 ○○○ 지방○○○ ○○○(현 지방○○○, ○○○○○○○), 지방○○○ ○○○(현 지방○○○, ○○○○○○○), 지방○○○ ○○○(현 지방○○○, ○○○○○○○), 지방○○○ ○○○(현 ○○○○○○○), 지방○○○ ○○○(현 ○○○○○○○), ○○○○ 지방○○○ ○○○(현 지방○○○, ○○○○○○○), 지방○○○ ○○○(현 지방○○○,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

②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별첨]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대상 분할구매 부적정 현황

<생략>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시정요구

제 목 ○○○○○ 운영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미반납

소 관 기 관 도로관리사업소

조 치 기 관 도로관리사업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에서는 「경상남도 지방도 등 유지·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라 지방도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전 시·군에 ○○○○○ 인건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표 1] ○○○○○ 운영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 원)

연도별	사업명	지원인원	지원금액
합 계		665	24,431,519
2018	○○○○○ 운영 지원사업	165	5,167,572
2019		165	5,848,304
2020		166	6,520,408
2021		169	6,895,235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폐지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그 지방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8조(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이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방보조금의 반환)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방보조금 금액으로 발생한 이자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반환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 ○○○○○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고 확정된 지방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액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한을 정하여 반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도로관리사업소 ○○○○○에서는 [표 2]와 같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도로보수원 운영 지원사업 정산을 실시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시군에 대해서는 이자발생액을 산출하여 반납조치 하였으나, 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시군에 대해서는 이자액 반환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님에도 이자발생액을 파악하여 반환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기간('22. 3. 16. ~ 3. 23.) 중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도로보수원 운영 지원 사업 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액을 조사한 결과 [표 2]와 같이 4년간 총 35,677천 원의 이자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도로보수원 운영 지원사업 이자액 미반납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별	미반납 시군	미반납 금액	비고
합 계		35,677	
2018	○○○ 등 15개 시군 (○○시,○○군,○○군 제외)	4,048	분기교부
2019	○ 등 16개 시군 (○○군,○○군 제외)	5,971	분기/반기 교부
2020	○ 등 17개 시군 (○○군 제외)	14,525	일괄교부
2021	○ 등 15개 시군 (○○시,○○시,○○군 제외)	11,133	일괄교부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시군별 이자발생액 미반납 현황 [별첨]

## 관계기관 의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 담당공무원의 관련법령에 대한 업무연찬 부족과 업무미숙 등으로 해당내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앞으로 관련법규 숙지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미반납 이자액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액 35,677천 원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라 반환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첨]

시군별 이자발생액 미반납 현황

- 생략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시정요구

제 목 공무상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도로관리사업소

조 치 기 관 도로관리사업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도로관리사업소 및 진주지소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여비의 종류)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등으로 구분하고 같은 규정 제8조의2에서 국내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에 따르면 일비는 [별표 2]에 따라 1일당 2만 원을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 출장시 여비는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sup>1)</sup>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생활치료센터 운영 업무소관 부서인 사회재난과에서는 부서별로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명단을 통보하면서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의 경우 근무기간 중 숙식을 제공받아 일·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입·퇴소일에 한해서만 일비,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함을 경상남도 내부메신저를 통해 안내하였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공무상 출장한 공무원의 출장여비 정산 시 관내에서 출장한 시간이 4시간 미만이거나 관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무기간 중 숙식을 제공받아 별도의 경비 지출이 필요없는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의 경우는 관외출장비 지급 시 입·퇴소일 외의 근무기간에는 일비·식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2018. 3. 19.부터 2022. 3. 23. 감사일 현재까지 관내출장 여비를 지급하면서 [표 1]과 같이 4시간 이상 관내출장 승인 후 실제 4시간 이내에 출장을 완료한 경우와,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수행한 경우에는 일비를 1만원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전액 지급하여 총 662건, 6,620,000원의 일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1)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여비 구분없이 정액으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을 지급하나 실무상 관내출장 여비 지급 시 일비로 지급함.

[표 1]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 건, 원)

구분	합계		4시간 미만 출장에 일비 과지급		관용차 이용 일비 과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62	6,620,000	656	6,560,000	6	60,000
본소	503	5,030,000	497	4,970,000	6	60,000
진주지소	159	1,590,000	159	1,590,000	-	-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현황 [별첨] 참조

또한 진주지소에서는 [표 2]와 같이 2021년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에 대한 관외 출장비를 지급하면서 근무기간 중 숙식을 제공받는 등 별도의 경비 지출이 불필요하여 일비·식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4명에 대해 총 1,880천 원의 관외출장비(일비·식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근무기간 중 일비·식비 과지급 현황(진주지소)

(단위 : 원)

성명	출장일자	지급금액			과다지급액			비고
		계	일비	식비	계	일비	식비	
합계		2,040,000	1,160,000	880,000	1,880,000	1,000,000	880,000	
○○○		280,000	280,000		240,000	240,000		입퇴소일 일비인정
○○○		560,000	280,000	280,000	520,000	240,000	280,000	
○○○		600,000	300,000	300,000	560,000	260,000	300,000	
○○○		600,000	300,000	300,000	560,000	260,000	300,000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도로관리사업소 및 진주지소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여비정산처리담당자의 출장여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미숙지와 출장명령 승인 후 출장출발 지연, 조기복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관행

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앞으로 업무연찬 강화 및 여비지출 산정 내역을 이중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등을 위반하여 과오지급한 출장여비 8,500천 원을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시설부대비(공사감독 피복)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도로관리사업소

조 치 기 관 도로관리사업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2018. 3. 19.부터 2022. 3.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시설부대비로 총 42건, 68,767천 원을 공사감독 피복비 명목으로 집행하였다.

[표 1] 공사감독 피복 집행현황

(단위: 천 원)

구분	부서명	예산과목	집행건수	집행금액	비고
합계			42	68,767	
본소	○○○○과	시설부대비	4	1,696	
	○○○○과		27	47,608	
	○○○○과		6	11,783	
지소	○○○○과		5	7,680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1조(목적) 및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시설부대비(401-03)를 현장감독공무원 피복비 등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고,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와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 및 입회자 등에게는 여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규칙 및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장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공사기간<sup>1)</sup>, 구매대상 물품의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sup>2)</sup>, 가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해야 하며, 고가의 등산용품 등은 구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감독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 대리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건설사업 관리 등의 시행)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부대비를 현장 감독공무원의 피복비로 지급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우선 구매하여 지급하되, 고가의 등산복 등을 구매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고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부대비 예산을 본인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또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이익이 추구되는 행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동일기간 다수현장 감독자에 대한 중복지급 제한  
2) 공사감독용 안전모, 안전화 등 실제 필요성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2018. 3. 19.부터 2022. 3. 23. 감사일 현재까지 시설부대비로 총 42건, 68,767천원을 공사감독공무원의 피복비로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가. 현장 공사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피복비 지급 부적정

도로관리사업소 ○○○○과 등 3개 부서에서는 시설부대비를 집행하면서 현장 공사감독공무원이 아닌 용역감독공무원 등에게 [표 2]와 같이 총 12건, 5,115천원을 시설부대비(피복비)로 집행하였다.

[표 2] 현장공사감독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부서명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자		비고
				직급	성명	
총계	12건		5,115	6명		
1	○○○○과	2021.12.27.	496	지방○○○	○○○	용역감독
2	○○○○과	2021.12.27.	496	지방○○○	○○○	용역감독
3	○○○○과	2022.1.7.	450	지방○○○	○○○	용역감독
4	○○○○과	2022.1.7.	450	지방○○○	○○○	용역감독
5	○○○○과	2019.6.28.	357	지방○○○	○○○	용역감독
6	○○○○과	2019.12.16.	462	지방○○○	○○○	용역감독
7	○○○○과	2019.12.16.	462	지방○○○	○○○	실무담당자
8	○○○○과	2019.12.16.	462	지방○○○	○○○	용역감독
9	○○○○과	2019.12.27.	340	지방○○○	○○○	용역감독
10	○○○○과	2019.12.27.	340	지방○○○	○○○	용역감독
11	○○○○과	2020.12.21.	320	지방○○○	○○○	용역감독
12	○○○○과	2019.12.27.	480	지방○○○	○○○	실무담당자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나. 공사종료 이후 피복비 지급 부적정**

도로관리사업소 ○○○○과 등 3개 부서에서는 시설부대비(공사감독 피복) 집행기한 규정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현장감독 업무수행이 필요하지 않거나 특별한 지급사유가 없는데도 준공 이후 공사감독에게 [표 3]과 같이 총 7건, 3,253천원을 시설부대비로 지급하였다.

[표 3] 공사종료 이후에 피복비를 지급한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부서명	지급일자	준공일	지급금액	지급자		비고
					직급	성명	
총계	7건			3,253	7명		
1	○○○○과	2021.12.27.	2021.12.23.	496	지방○○○	○○○	
2	○○○○과	2019.6.28.	2019.6.17.	357	지방○○○	○○○	
3	○○○○과	2019.12.27.	2019.12.23.	480	지방○○○	○○○	
4	○○○○과	2019.12.27.	2019.11.26.	480	지방○○○	○○○	
5	○○○○과	2021.12.24.	2021.12.17.	480	지방○○○	○○○	
6	○○○○과	2021.12.24.	2021.12.16.	480	지방○○○	○○○	
7	○○○○과	2021.12.24.	2021.12.16.	480	지방○○○	○○○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다. 계약담당자의 시설부대비(공사감독 피복) 집행 적정성 여부 미확인**

계약담당자는 위와 같이 시설부대비로 피복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현장공사감독 권한의 유무, 공사기간, 구매의 타당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업부서의 구입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여 관련 규정 검토 없이 현장공사감독이 아닌 자 등에게 집행하였다.

[표 4] 피복 계약담당자 현황

부서명	담당기간	계약담당자	부서명	담당기간	계약담당자
관리과	2019.2.12.~2020.1.1.	지방○○○ ○○○	진주시소	2019.7.10. ~ 2020.1.2.	지방○○○ ○○○
	2020.1.2.~2021.1.3.	지방○○○ ○○○		2021.7.26. ~ 2022.1.12.	지방○○○ ○○○
	2021.3.4.~2022.1.11.	지방○○○ ○○○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라. 조달청을 통한 우선구매 절차 없이 관내 업체를 통하여 고가의 등산복 구입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2018. 3. 19.부터 2022. 3. 23. 감사일 현재까지 시설부대비로 총 42건, 68,767천원을 공사감독 피복비로 집행하면서 조달청을 통한 우선 구매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중 95.2%에 해당하는 40건 총 67,907천원을 관내 등산복 판매업체를 통하여 고가의 등산복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마. 피복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부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부대비로 피복 지급을 위한 내부계획 및 회계서류를 작성하면서 감독공무원, 공사명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정하지 않고 집행하면서 총 42건 모두 공사감독자의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집행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 관계기관 의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현장감독공무원이 아닌 자,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 시설부대비(피복비)를 집행하였지만 앞으로는 내부계획 수립 시 감독공무원, 집행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투명하게 피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위반하여 공사종료 이후 또는 현장 공사감독이 아닌 자가 시설부대비(피복비)를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실무담당자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 지방○○○ ○○○, 실무담당자 지방○○○ ○○

○(현 지방○○○, ○○○사업소), ○○○○과 지방○○○ ○○○, 지방○○○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담당자 ○○○○과 지방○○○ ○○○, ○○○○과 지방○○○ ○○○(현 지방○○○, ○○○○과), 지방○○○ ○○○(현 지방○○○), ○○○○ 지방○○○ ○○○, 지방○○○ ○○○(현 지방○○○, ○○○○과), 지방○○○ ○○○(현 지방○○○, ○○○○과), 지방○○○ ○○○(현 지방○○○, ○○○○과), 지방○○○ ○○○(현 지방○○○, ○○○○○○○과), 지방○○○ ○○○, 지방○○○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위반하여 시설부대비(피복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실무담당자 도로관리사업소 ○○○○과 지방○○○ ○○○(현 ○○○○○과), 지방○○○ ○○○(현 지방○○○, ○○○과), 도로관리사업소 ○○○○ 지방○○○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훈계, 주의**)

#### 도로관리사업소장은

- ② 시설부대비(피복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체기준 설정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요구

제 목 지출원 부재 중 회계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도로관리사업소

조 치 기 관 도로관리사업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및 「경상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라 [표 1]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도로관리사업소 회계관직 지정 현황

구 분	재무관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본 소	소 장	관리담당	관리담당 회계담당자
지 소	지소장	관리담당	관리담당 회계담당자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기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대행 및 대리) 및 제4조(책임)에 따르면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실 및 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 직원 중 최상급자, 분장사무 중 사무분야 담당 순위에 의한 사무관의 순으로 대리하며,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118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에 따르면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그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출업무를 대리할 회계관계직원을 지정하여 지출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지 않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도로관리사업소 ○○○○에서는 2018. 3. 19. 부터 2022. 3.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지출원이 휴가 등으로 부재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회계담당자가 지출원의 구두승인 및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지급명령을 이행하는 등 총 11건, 254,638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2] 지출원 부재 중 지출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연 번	지출원	지출일자	지출금액	지출내용	비 고
	실무담당자				
합계	11건		254,638		
1	지방○○○ ○○○ 지방○○○ ○○○	2018.9.19	3,577	공무직 근로자 단속요원 명절(추석)휴가비 지급	
2	지방○○○ ○○○ 지방○○○ ○○○	2018.9.19	7,912	공무직 근로자 도로보수원 명절(추석) 휴가비 지급	
3	지방○○○ ○○○ 지방○○○ ○○○	2019.3.5.	6,086	2월분 삼신봉터널 시천측 외 1개소 전기요금 지급	
4	지방○○○ ○○○ 지방○○○ ○○○	2019.3.27.	92,400	안계교 재가설공사 대금/ 명시이월	
5	지방○○○ ○○○ 지방○○○ ○○○	2019.3.27.	28,574	지방도1003호선 횡천지구 외 2개소 배수시설 정비 공사 관급자재(아스콘-하동)/사고이월	
6	지방○○○ ○○○ 지방○○○ ○○○	2019.3.27.	20,222	국지도60호선 백연지구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관급 자재(낙석방지책)	
7	지방○○○ ○○○ 지방○○○ ○○○	2019.5.3.	3,710	4월 출장여비 지급	
8	지방○○○ ○○○ 지방○○○ ○○○	2019.5.3.	19,884	지방도1007호선 별당지구 미끄럼방지포장 구입 및 설치	
9	지방○○○ ○○○ 지방○○○ ○○○	2019.6.13.	560	2019년 4~6월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지급	
10	지방○○○ ○○○ 지방○○○ ○○○	2019.8.20.	3,688	2019년 8월 급여 지급-임기제	
11	지방○○○ ○○○ 지방○○○ ○○○	2019.8.20.	68,025	2019년 8월 급여 지급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시소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관련 법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지출하는 등 관련 업무 처리에 미숙함이 있었으며, 향후 회계관계공무원 부재가 발생할 경우 대리 관직지정 후 회계처리를 하는 등 회계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등을 위반하여 적법절차에 따른 지출행위를 하지 않은 실무책임자(지출원) 도로관리사업소 ○○○○ 지방○○○ ○○○(현 ○○○과), 실무담당자 도로관리사업소 ○○○○ 지방○○○ ○○○(현 지방○○○,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②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국도○○호선 ○○ ○○ 병목지점 개선사업 행정절차 등 미이행  
소 관 기 관       도로관리사업소  
조 치 기 관       도로관리사업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도로관리사업소 ○○○○에서는 [표 1]과 같이 2019. 5. 21. (주)○○○○○○(대표 ○○○)와 도금액 3,836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9. 착공하여 2022. 7. 6. 준공예정으로 ‘국도○○호선 ○○ ○○ 병목지점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표 1] 국도○○호선 ○○ ○○ 병목지점 개선사업 현황

사 업 명	계약 일자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시공회사	비 고 (현공정)
				계	도급	관급			
국도○○호선 ○○ ○○ 병목지점 개선사업	2019. 5.21.	○○읍 ○○리	도로확포장 L=1.3km, B=25m	5,815	3,836	1,979	‘19. 5. 29 ~’22. 7. 6.	(주)○○○○○○ 대표 ○○○	30%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 2. 매장문화재지표조사 등 행정절차 미이행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는 토지에서 시행하

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사업면적이 3만㎡ 미만이면서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또는 역사서, 고증된 기록 등 문화재 매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나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5천㎡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sup>1)</sup>대상에 해당함으로써 관리청과 협의를 해야하며 협의 시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개발사업

구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라. 교통시설의 건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2)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만 해당함)	공사 시행 전
	5)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 삭제 <2018. 12. 31.>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관계법령 재구성]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 ○○○○에서는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할 경우 대상사업의 규모를 검토하여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그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 등에는 규정하는 시기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대하여 관리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 중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도로관리사업소 ○○○○에서는 [표 2]와 같이 본 공사의 사업계획 면적이 41,668㎡로서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3만㎡ 이상)에 해당하여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2018. 7. 12. 문화재청에 문화재지표조사 협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후 본 사업의 규모가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자의적 판단<sup>2)</sup>하여 문화재청과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사업규모가 41,668㎡로서 도로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 관리기관과 사업시행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여부

사업명	사업 규모	도로구역결정	행정절차 이행여부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	농지 전용	산지 전용	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국도○○호선 ○○○○ 병목지점개선 사업	도로개선 <b>A=41,668㎡</b> (L=1.3km B=25m)	'19.5.9	'20.7.1	'19.4.23	미해당	<b>미실시</b>	'20.1.31	<b>미실시</b>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 3. 하수관로 수밀검사 등 품질검사 분리발주 미이행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2003. 5. 21. 「공공하수도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하수 67712-549)에 따르면 발주청은 하수관로 설계 시 일부시공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준공할 때에는 필요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도록 시방서에 언급하여야 하며, 관로의 수밀검사 및 CCTV 조사

2)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 규모는 "토지를 해체하여 재조성하는 면적"만 해당하는 것으로 인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여 실시하되 하수관거 수밀검사 및 CCTV 조사 등을 분리발주하지 않고 도급액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함에 따라 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분리발주하거나 관리청에서 직접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 ○○○○에서는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하수관로 공사를 시행 할 경우에는 시공의 적정성 확인과 품질검사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수관거 수밀검사 및 CCTV 조사 등의 품질시험은 도급내역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하거나 발주청에서 직접 검사하도록 설계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도로관리사업소 ○○○○에서는 [표 3]과 같이 계약상대자 ○○○○○○(주)(대표 ○○○)가 시공 계획인 하수관로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수밀검사 및 CCTV 조사 등 품질시험을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발주청이 직접 검사하도록 계획하지 않고 도급사의 계약내역에 통합 반영하여 도급자가 시공한 관로의 적정성을 자신이 직접 검사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표 3] 품질검사 분리발주 미이행 현황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시험비(천원)	공사기간	시공사	비 고
국도○○호선 ○○ ○○ 병목지점 개선사업	○○읍 ○○리	L=389m	하수관로 (92,096)	수밀검사 및 CCTV 조사 (5,070)	'19. 5. 29 ~'22. 7. 6.	(주)○○○○○○○ 대표 ○○○	통합 발주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도로관리사업소 ○○○○는 문화재지표조사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이행해야 함에도 업무미숙으로 잘못 판단하여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미이행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하수관로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수밀검사 및 CCTV 조사용역의 분리발주 또는 발주청이 직접 검사해야 하는 규정사항은 도로관리청에서 빈번하게 진행되는 업무가 아니어서, 업무 경험부족으로 일괄 발주하였으나 설계변경 후 분리 발주하고 앞으로는 행정절차 등을 놓치지 않도록 신중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등을 위반하여 매장문화재지표조사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미이행과 품질검사 분리발주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실무담당자 도로관리사업소 ○○○○ 지방○○○ ○○○(현 ○○○○○과)**를 「경상남도 행정감사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따라 ‘**훈계**’ 처분하고, 실무담당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실무책임자 도로관리사업소 ○○○○ 지방○○○ ○○○(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훈계, 주의**)

## 도로관리사업소장은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지표조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 도급내역에 통합하여 일괄 발주한 수밀검사 및 CCTV 조사 등 품질검사에 대해서도 분리 발주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지구 정비공사 공사감독 업무 및 준공검사 처리 등 소홀  
소 관 기 관 도로관리사업소  
조 치 기 관 도로관리사업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표 1]과 같이 2020. 7. 6. (주)○○○○(대표자 ○○○)과 4,891백만 원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7. 13. 착공하여 2022. 8. 24. 준공 예정으로 [그림 1]과 같이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이하 ‘○○○○지구 정비공사’라 한다)를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고 있다.

[표 1]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현황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백만 원)				사업기간	시공회사	비고 (현공정)
			계	도급 <sup>1)</sup>	관급	기타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시 ○○면 일원	위험사면정비 L=1.24km	7,225	4,891	2,154	180	'20.7.13.~ '22.8.24.	(주)○○○○ 대표 ○○○	60%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1) 2020. 7. 6. 최초 계약 이후 설계변경을 사유로 도급액 증액(30백만 원).

[그림 1]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계획 평면도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 2. 건설공사 공사감독 업무수행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및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1호, '15. 9. 2.)」 제2장 2-4-5(사토)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사토장 선정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987호)」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 시행의 전반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각 공종마다 확인·검측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 ○○○○○에서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계약상대자가 사토장 선정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고, 공사시행의 전반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각 공종마다 확인·검측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도로관리사업소 ○○○○○에서는 (주)○○○○○<sup>2)</sup>(이하 ‘시공사’라 한다)이 2020년분 ○○○○지구 정비공사를 시공하면서 2021. 11. 1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10일간)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토량 4,970m<sup>3</sup>을 사토처리 하면서 사토처리 시작 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사토장 선정 및 처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토를 처리한 것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표 2]와 같이 실제 사토처리는 사토거리 18.1km 및 사토량 4,331m<sup>3</sup>(토사 + 리핑 1,227m<sup>3</sup>, 발파암 3,104m<sup>3</sup>)로 설계서상의 사토거리 20.0km 및 사토량 4,970m<sup>3</sup>(토사 + 리핑 1,219m<sup>3</sup>, 발파암 3,751m<sup>3</sup>)보다 사토거리 1.9km 및 사토량 639m<sup>3</sup>이 부족하여 설계내용과 상이함에도 설계변경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2] 사토처리 현황

사 토 장	사토거리(km)			수 량(m <sup>3</sup> )								
	설계	조정	차이	계			토사 및 리핑			발파암		
				설계	조정	증감	설계	조정	증감	설계	조정	증감
○○시 ○○면 ○○리 ○○○-1	20.0	18.1	1.9	4,970	4,331	639	1,219	1,227	8	3,751	3,104	△647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 2]와 같이 시공사가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토처리 전체물량 4,970m<sup>3</sup>

2) 토공업에 대하여 2020. 8. 14. ○○○○(주)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25. 토공사를 착공 함.

(발파암<sup>3)</sup> 3,751m<sup>3</sup>, 리핑암<sup>4)</sup> 66m<sup>3</sup>, 토사<sup>5)</sup> 1,153m<sup>3</sup>) 중 준공누락 구간<sup>6)</sup>에서 발생 예정이었던 발파암 356m<sup>3</sup>을 사토처리 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암 4,614m<sup>3</sup> 중 발파암 291m<sup>3</sup>을 사토장으로 반출하지 않고 현장 내 임의로 임시작업장을 조성하거나 현장 내 무단투기하는<sup>7)</sup> 등 총 발파암 647m<sup>3</sup>을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조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별도 조치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 3. 준공검사 업무처리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의 지급,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 전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검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의 부실추정)와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및 제82조(영업정지<sup>8)</sup>)에 따르면 시공사가 설계도서,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3) 발파공법 등을 사용하여 절취하는 암반.

4) 불도저에 부착된 리퍼를 사용하여 절취할 수 있을 정도로 풍화가 진행된 지층의 암.

5) 굴삭기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흙, 모래, 자갈이 섞인 토질.

6) 2020년분 ○○○○지구 정비공사의 준공대상 사업구간 NO.0+00~NO.39+10(L=790m) 중 NO.34+00~NO.38+00 (L=80m) 구간의 흙막기 미준공구간임.

7) 사토처리 경위서를 시공사로부터 확인서 징구함(참조).

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등 업무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고의나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가 고의나 과실로 설계도서, 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 벌점 부과 및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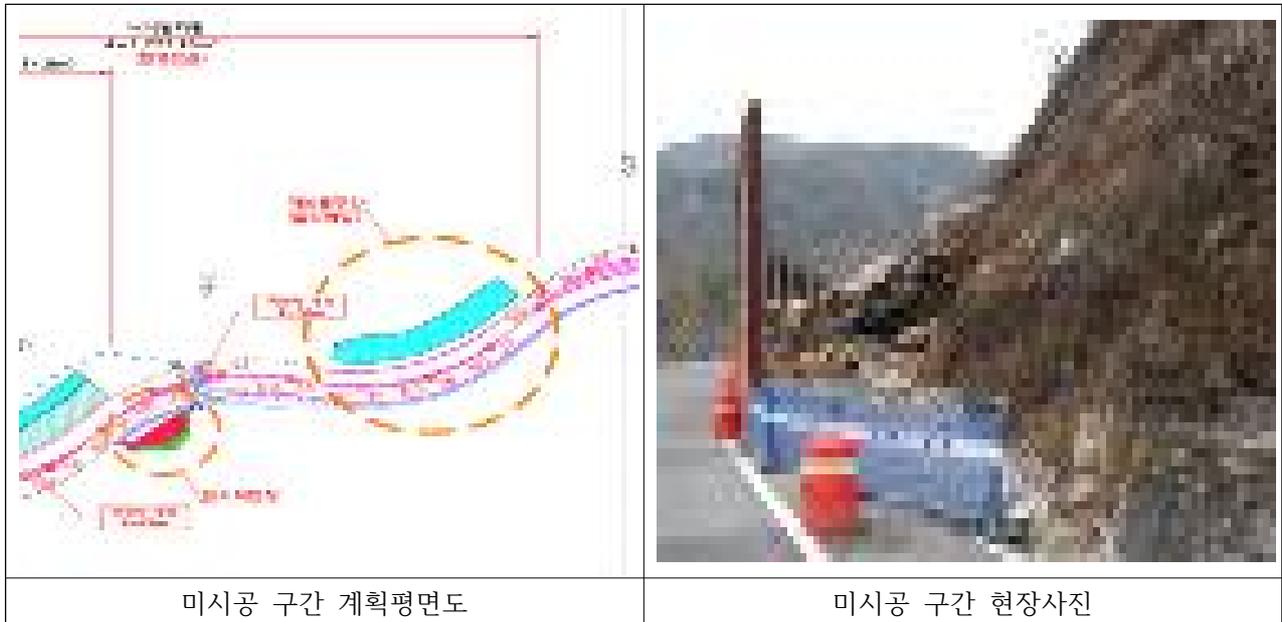
그런데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감독자는 [표 3] 및 [그림 2]와 같이 시공사가 2020년분 ○○○○지구 정비공사 준공 사업구간 NO.0+00~NO.39+10(L=790m) 중 NO.34+00~NO.38+00(L=80m)구간의 흙막이 479m<sup>3</sup>, 사토처리 356m<sup>3</sup>가 미준공한 상태로 2021. 12. 21.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12. 22. 준공검사 전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3] 준공누락구간 공종현황

공 종	2020년분(1차)			2021년분(2차)		
	사업량	완료	미완료	사업량	완료	미완료
흙깎기	토사 123m³ 발파암 356m³	-	토사 123m³ 발파암 356m³	-	-	-
구조물 깨기	L=59m	L=59m	-			
L형측구(옹벽식)	-	-	-	62.4m	-	62.4m
낙석방지망	-	-	-	1,050m²	-	1,050m²
암파쇄방호시설 설치	L=80m	L=80m	-	-	-	-
사토처리	발파암 356m³	-	발파암 356m³	-	-	-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그림 2] 미시공 구간 사면현황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준공검사자는 [표 3]와 같이 제출한 준공검사원의 준공물량이 계약내용대로 시공되지 않고 계약이행 내용의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어 있었음에도 2021. 12. 22. 준공검사 시 미준공 물량\*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 [표 4]와 같이 공사비 26,712천 원 상당을 과다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020년분 ○○○○지구 정비공사 미준공 물량은 2022. 3. 23. 감사일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임을 확인했고,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2022년 발주분에 반영하여 준공을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표 4] 사토처리 검토결과 공사비 조정내역

(단위 : m³, 천 원)

구 분	당 초(설계내역서상)(A) L=20km			조 정(B) L=18.1km			증 감 (A-B)
	단 가 (원)	수 량	공 사 비	단 가 (원)	수 량	공 사 비	
사토처리	40,819	4,970	131,801	37,977	4,331	105,089	26,712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시공사가 2020년분 ○○○○지구 정비공사 준공물량을 계약내용대로 시공하지 않고 미준공 상태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득하였고, 현장 내 임의로 임시작업장을 조성하거나 현장 내 무단투기하는<sup>9)</sup> 등 총 발파암 647m³을 허위처리 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음에도 2022. 3. 23. 감사일 현재까지 부실벌점 부과 및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 4. 건설공사 발생암 처리절차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40조(암반선 확인)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 착공 즉시 암판정위원회<sup>10)</sup>를 구성하고 암반선 노출 시 암판정<sup>11)</sup>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가치 있는 부산물(암석)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인 위 발주청에 있으며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공고,

9) 사토처리 경위서를 시공사로부터 확인서 징구함.(참조)

10) 암판정위원회는 공사감독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11) 절토부 암판정을 할 때에는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등을 준비하고 물량 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암질 구분표시), 공사비 증감대비표 등 첨부한 암판정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절차를 준용하여 세입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sup>12)</sup>(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7호)에 따르면 발주청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 ○○○○○에서는 건설공사 착공 즉시 암판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암반선 노출 시 암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발생한 토석에 대하여 현장유용 또는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거나 발생암에 대한 매각처리를 위한 입찰공고를 통하여 세입조치를 하는 등 현장여건에 맞는 시공계획을 결정하여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도로관리사업소 ○○○○○에서는 [표 5]와 같이 공사시공과정에서 설계서(물량내역서)상 절개지 발파암(연암) 3,751.1m<sup>3</sup>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공사 착공 시 암판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암반선이 현장에 노출되어 착공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여 암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본 사업의 설계서 상에 골재구입이 5,722m<sup>3</sup><sup>13)</sup> 반영되어 있는데도 발생한 발파암을 현장 내 잡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조치를 하지 않았고, 예산절감 및 공사 현장으로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매각공고<sup>14)</sup>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12) 이 요령에 따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사토·순성토의 설계량 과 발생량이 1,000m<sup>3</sup> 이상인 건설공사로 한다.

13) 보조기층재(Ø40mm, 도착도) 848m<sup>3</sup>, 뒤채움 잡석(Ø40mm, 도착도) 4,874m<sup>3</sup> 구입 반영.

14) 온비드시스템(Onbid)을 이용한 입찰공고를 통하여 매각 절차 이행함으로써 공유재산 처리.

[표 5] 설계서상 발파암 현황

구 간	설계서 상 암 질	수 량 (m³)	암썩기 공 법	암판정 위원회 <sup>15)</sup> 개최 여부
계		3,751.1		
1구간 NO 1+00~NO 5+10	연 암	1,251.0	대형브레이크	미시행
2-1구간 NO 5+10~NO 14+00	연 암	68.7	대형브레이크	"
2-2구간 NO14+00~NO20+12.07	연 암	458.4	대형브레이크	"
3구간 NO 26+10~NO 39+10	연 암	1,251.1	대형브레이크	"
4구간 NO 39+10~NO 50+10	연 암	156.0	대형브레이크	"
5구간 NO 50+10~NO 62+00	연 암	125.50	대형브레이크	"
배수공,부대공 터파기	발파암	254.94	대형브레이크	"
절토면고르기	발파암	185.49	대형브레이크	"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 5.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부적정

### 가. 관련법령(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부당특약의 유형)에 따르면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민원 처리, 임시시설물 설치, 추가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등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제1호에 따르면 원사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수급인(발주자를 포함)이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수급인의 지시<sup>16)</sup>에 따른

15) 암판정위원회는 공사감독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16) 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함.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부당특약고시」<sup>17)</sup>에 따르면 목적물 등의 검사비용을 하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비용을 하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계약내용에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수급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계약 해제·해지 사유를 수급인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수급인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한 약정 등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특약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9조(하도급 관련사항)에 의한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따른 불공정행위(부당특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 ○○○○○에서는 ○○○○지구 정비공사의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불공정한 하도급 조건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 없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하며, 계약부서로부터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을 받은 경우 그 의견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도로관리사업소 ○○○○○에서는 ○○○○지구 정비공사의 시공사가 [표 6]과 같이 계약기간 중 [표 7]과 같이 “돌관작업(야간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4호(2019. 6. 19.)

될 때에는 ‘갑’측이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추가금액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부당특약 등 하수급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6건의 부당특약 내용을 공사 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2020. 8. 12. ○○○○○○○○과 같은 해 8. 14. ○○○○(주)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14.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도로관리 사업소에 제출하였음에도 하도급 부당특약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특약사항 변경을 요구하는 등 조치 없이 2022. 3. 23. 감사일 현재까지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6] 하도급 계약 현황(변경계약 포함)

회사명	공 종	계약일	하도급금액(천 원) (도급액18)	하도급율
○○○○○○○○○	영구앵커	2020.8.12	1,276,365 (1,415,567)	90.17%
○○○○(주)	토공	2020.8.14	706,969 (843,503)	83.81%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표 7] 부당특약의 유형 및 계약조건에 명기된 부당특약 내용

부당특약유형	공사계약에 명기된 부당특약 내용
유 형	
①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
②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b>제4조(특약사항)</b> 5) 돌관작업(야간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갑”측이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추가금액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인의 업무범위에는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각종 민원처리 및 비용이 포함한다. ※ 안전관리비(공사용간판 10개)
③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b>제24조(하자담보)</b> ⑤ 공사의 하자가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을은 실액변상을 하거나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18) 원도급사가 발주청과 계약한 도급내역 중 하도급 부분의 금액.

부당특약유형	공사계약에 명기된 부당특약 내용
④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
⑤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b>제1조(계약보증금등의 처리)</b> ③ (선급금의 정산) 선급금 반환사유 발생시에는 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을 하도급대금 지급에 우선하여 미정산선급금 잔액과 상계한다.
⑥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b>제3조(보험가입등)</b> ⑥ ③④⑤항에 의한 갑의 손해에 있어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을 경우나 갑의 손실금액보다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적을 경우 갑은 통고하고 을은 즉시 전액변상한다.
⑦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b>제3조(보험가입등)</b> ③ 을은 본 공사 수행에 있어 갑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재산에 대하여 상해 또는 피해를 야기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만약 갑에 대하여 청구가 있을 때도 을의 책임과 부담하에 처리해야 한다.
⑧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b>제2조(연대보증인의 권리,의무)</b> ③ 갑과을은 도급계약상의 계약이행의무(하자보수이행포함)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인인 1인을 세우며, 연대보증인은 을의 입찰 참가자격등과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출처 : 도로관리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본건 발생의 원인이 당초 설계서 상 암반선이 도출암으로 반영되어 있고 현장확인 결과 설계서와 일치하여 별도의 암판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대로 시공하였으며, 연말 준공시점에서 다른 업무와 중복으로 인해 시공사의 준공제출 서류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였으며, 본 공사가 차수사업으로 됨에 따라 2020년분과 2021년분 사업물량이 사업구간에 걸쳐 혼재되어 있어 금번 감사 지적된 미준공구간이 2020년분 준공물량인지 인식하지 못하였고, 공사현장이 장거리(○○시↔○○시)이고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① ○○○○지구 정비공사 공사감독 업무수행과 준공검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고 건설공사 발생암 처리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도로관리사업소 ○○○○○ 지방○○○ ○○○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의결 요구하고 준공검사와 지도·감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 도로관리사업소 ○○○○○ 지방○○○ ○○○(현 ○○○○○)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합니다.(경징계, 훈계)

## 도로관리사업소장은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에 따라 시공사인 (주)○○○○이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부실벌점부과,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고, 과다 지급된 26,712천 원 상당의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수급인(○○○○)과 하수급인(○○○○○○○, ○○○○)과의 부당특약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 산림유역관리사업(사방사업) 등 공사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림환경연구원  
조 치 기 관 산림환경연구원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산림환경연구원 ○○○○과에서는 ‘2018년 ○○○○○○○○ 산림유역관리사업’ (이하 ‘사방사업<sup>1)</sup>’라 한다) 등 10건의 공사<sup>2)</sup>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4조(성실 및 청렴 의무) 및 제138조(시공 확인)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감독 하도록 되어 있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정의) 2호에 따라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에 따른 사업종류로는 산림유역관리사업, 사방댐사업 등이 있다.

2) 2018년 ○○○○○○○○ 산림유역관리사업 등 10건의 공사는 [별표] 참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등의 계약에서 계약내용<sup>3)</sup>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 (설계변경)에 따라 설계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는 설계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공사감독을 수행하면서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 시행 단계별로 감독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는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 이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2018. 4. 20.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2018년 ○○○○○○○○ 산림유역관리사업’ 공사감독을 수행하면서 도급자가 시공하기로 한 합판거푸집<sup>4)</sup> 총 198㎡의 물량 중 125㎡는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한 유로폼<sup>5)</sup>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는 등 [표 1]과 같이 8개 공사를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계약 금액 감액없이 도급액 총 20,537천 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공사계약의 체결) 2. 계약문서에는 계약서,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4) 합판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소정의 형태 및 치수로 만들기 위하여 일시 설치하는 거푸집의 일종. 내수합판(耐水合板)을 널 대신 쓰는 것으로서 정밀도를 요하는 콘크리트의 거푸집을 말한다.

- 합판거푸집의 횡수(1~6회)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며  
1회는 제물치장(콘크리트마무리)에 적용되며, 3회는 복잡한 콘크리트 구조물(교대, 교각 등)에 적용

5) 유로폼이란 일정한 규격으로 미리 합판 등의 뒷면에 강재 틀을 붙인 거푸집을 말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3-3에서는 유로폼 설치 및 해체에 대한 단가산출근거가 수록되어 있다.

[표 1] 설계서와 다른 거푸집을 시공한 사방사업 공사 현황

(금액단위: 천 원)

연 번	공 사 명	임의 변경 내용			공사기간	도급액 지급일자	과다지급 도급액*
		설계	시공	물량			
	<b>합 계</b>						<b>20,537</b>
1	2018년 ○○○○○○○○○ 산림유역관리사업	합판거푸집 3회	유로폼	125m <sup>2</sup>	'18. 4. 20. ~ '18. 12. 14.	'18. 12. 27.	2,675
2	2018년 ○○○○○○○○○ 산림유역관리사업	합판거푸집 3회	유로폼	65m <sup>2</sup>	'18. 4. 20. ~ '18. 10. 16.	'18. 11. 8.	1,567
3	2019년 ○○○○○○○○○ 산림유역관리사업	합판거푸집 1회, 3회	유로폼	36m <sup>2</sup>	'19. 5. 2. ~ '19. 11. 4.	'19. 12. 18.	4,205
4	2020년 ○○○○○○○○○ 사방댐사업	합판거푸집 3회	유로폼	34m <sup>2</sup>	'20. 3. 18. ~ '20. 6. 15.	'20. 6. 29.	835
5	2021년 ○○○○○○○○○ 사방댐사업	합판거푸집 3회	유로폼	134m <sup>2</sup>	'21. 3. 9. ~ '21. 6. 6.	'21. 6. 25.	3,784
6	2021년 ○○○○○○○○○ 사방댐사업	합판거푸집 3회	유로폼	137m <sup>2</sup>	'21. 2. 17. ~ '21. 5. 17.	'21. 6. 23.	3,478
7	2021년 ○○○○○○○○○ 사방댐사업	합판거푸집 3회	유로폼	117m <sup>2</sup>	'21. 2. 17. ~ '21. 5. 17.	'21. 6. 29.	3,033
8	2021년 ○○○○○○○○○ 사방댐사업	합판거푸집 3회	유로폼	47m <sup>2</sup>	'21. 3. 30. ~ '21. 6. 27.	'21. 6. 30.	960

\* 과다 지급 도급액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할증 비율을 반영한 것임

※ 설계서와 다른 거푸집을 시공한 사방사업의 도급액 과다 지급 산출내역 [별첨 1] 참고

[출처 : 산림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0. 4. 29.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2020년 ○○○○○○○○○ 산림유역 관리사업’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서 상 문양거푸집<sup>6)</sup>의 물량이 224m<sup>2</sup>로 산정되어 있으나 도급자가 실제로는 78m<sup>2</sup>만 시공하는 등 [표 2]와 같이 2건의 공사에 대한 설계서의 물량 오류가 있는데도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을 감액 하지 않고 도급액 총 10,493천 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였다.

6) 문양거푸집이란 콘크리트 표면에 무늬의 생김새를 주기해 설치하는 거푸집을 말한다.

[표 2] 물량 과다 설계 사방사업 공사 현황

(금액단위: 천 원)

연 번	공 사 명	과다 설계 물량		공사기간	도금액 지급일자	과다지급 도금액*
		설계	시공			
	<b>합 계</b>					<b>10,493</b>
1	2020년 ○○○○○○○○ 산림유역관리사업	문양거푸집 224㎡	문양거푸집 78㎡	'20. 4. 29. ~ '20. 10. 30.	'20. 12. 3.	3,619
2	2021년 ○○○○○○○○ 유역관리사업	큰돌찰쌓기 440㎡	큰돌찰쌓기 367㎡	'21. 3. 10. ~ '21. 8. 26.	'21. 10. 19.	6,874

\* 과다 지급 도금액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할증 비율을 반영한 것임

※ 물량 과다 설계 사방사업의 도금액 과다 지급 산출내역 [별첨 2] 참고

[출처 : 산림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사방사업의 특성상 6월 우기 전 완료해야하는 사업특성(시급성)과 감독공무원 1인이 다수의 공사감독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 건은 거푸집과 큰돌쌓기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 및 감액조치를 하지 않은 사항임으로 준공된 공사 10건은 도급자로 하여금 환수 조치한다는 의견과 향후 공사감독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을 위반하여 사방사업에 대한 공사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산림환경연구원 산지보전과 지방○○○○ ○○○, 지방○○○○○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 합니다.(주의)

산림환경연구원장은

② 도급자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2018년 ○○○○○○○○ 산림유역관리사업 등 10건의 사방사업 공사 도급액 총 31,030천 원 상당에 대한 회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2018년 ○○○○○○○○ 산림유역관리사업 등 10건의 공사현황

- 생략 -

[별첨 1] 설계서와 다른 거푸집을 시공한 사방사업의 도급액 과다 지급 산출내역

- 생략 -

[별첨 2] 물량 과다 설계 사방사업의 도급액 과다 지급 산출내역

- 생략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제 목 산림유역관리사업 일상감사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림환경연구원  
조 치 기 관 산림환경연구원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산림환경연구원 ○○○○과에서는 산림재해에 강하고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유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와 같이 ‘2022년 산림유역관리사업’<sup>1)</sup>을 추진하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의뢰한 후 일상감사 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2022년 산림유역관리사업 현황

연번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비(천원)			계약업체 (계약일)	공사기간
			소 계	도급액	관급액		
1	2022년 산림유역관리사업 (○○○○○○지구)	창원시 ○○○	986,723	907,406	79,317	○○○ (‘22.4.29.)	’22.5.4. ~9.30.
2	2022년 산림유역관리사업 (○○○○○○지구)	사천시 ○○○	944,611	889,144	55,467	○○○ (‘22.4.29.)	
3	2022년 산림유역관리사업 (○○○○○○지구)	남해군 ○○○	904,688	755,401	149,287	○○○ (‘22.4.29.)	
4	2022년 산림유역관리사업 (○○○○○○지구)	거창군 ○○○	1,021,134	880,121	141,013	○○○ (‘22.4.29.)	
합 계		4개소	3,857,156	3,432,072	425,084		

[출처 : 산림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1) 산림유역은 산림지대에 비나 눈의 형태로 도달하는 강수가 산지계류 내 임의의 지점 또는 구간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공간적 범위를 말하며,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산림유역단위로 집약적인 사방사업 및 숲가꾸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상남도 일상감사 규정」 제8조(감사의 결과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일상감사 결과 부적정 의견을 통보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실제 조치했거나 조치할 내용대로 사실과 같이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에도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2022. 2. 17. ‘2022년 산림유역관리사업(○○○○○○지구)’ 등 4건의 사업에 대한 계약방법을 ○○○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여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요청<sup>2)</sup>하였으나, 감사위원회에서 같은 해

2) 산림환경연구원 ○○○○○-586(2022. 2. 17.), 수의계약 요청사유로 “사방사업법 및 2022년 사방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현장 지역 내 소재하여 지역민원 해결능력이 우수하고 사방사업 시공경험이 풍부하며, 비영리법인(부가가치세 면세)으로 예산절감과 재해발생 시 긴급복구 등 사방시설 사후관리에 효과적인 해당지역 산림조합과 계약체결 요청”으로 적시

3. 2. 및 3. 16. 두 번<sup>3)</sup>에 걸쳐 “지방계약법령의 취지와 목적,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지역산림법인의 보호, 예산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입찰이나 제한입찰 등으로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산림환경연구원 ○○○○과에서는 2022. 3. 24.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제출<sup>4)</sup>하면서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의견을 반영한 계약방법으로 계약부서와 협의 후 계약절차를 진행할 예정(3월말)”이라고 하였음에도, 같은 해 4. 8. “2022년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 건의 및 계약 의뢰” 공문<sup>5)</sup>을 생산하면서는 위 조치결과 문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공경험 및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에서 시공합이 타당하다”는 등의 사유로 조치 결과의 내용과 상반되는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sup>6)</sup>를 첨부하여 최종결재권자인 산림환경연구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였다.

아울러 산림환경연구원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의뢰받은 ○○○과에서 도내 산림조합과 2022. 4. 20. 계약 협상을 개시<sup>7)</sup>한 후 감사위원회가 일상감사 의견과 다르게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22. 4. 22.경) 동향을 통해 인지하였지만 계약 협상 중인 사안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할 실익이 없으므로, 결국 해당사안에 대해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감사위원회-2835(2022. 3. 2.), 아울러 2022. 3. 15. ○○○○○에서 일상감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2022. 3. 16.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를 기각함

4) 산림환경연구원 ○○○○○-1980(2022. 3. 24.)

5) 산림환경연구원 ○○○○○-2500(2022. 4. 8.)

6) [별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참조

7) 회계과는 도내 산림조합과 2022. 4. 29. 수의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음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고의적으로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의견에 반대하여 수의 계약을 추진한 것은 아니며,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등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였는바, 도민정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술력, 인력 및 장비, 체계적인 안전관리, 예산절감 효과, 법적근거, 민원해결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수의 계약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상감사 의견에 따른 집행부서의 조치가 감사부서의 의견과 다를 경우 해당 조치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치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다거나 이를 누락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산림환경연구원 ○○○○과의 이 건 업무처리는 「경상남도 일상감사 규정」 제8조(감사의 결과 등) 제2항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무엇보다 일상감사 제도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하거나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바, 감사부서의 일상감사 의견이 집행부서에 대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과 달리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경위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해 사실과 같이 명확히 보고하여 해당 조치에 대한 적정여부를 감사부서에서 판단 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조치결과가 부적정 할 경우 감사부서를 통해 기관장에게 보고가 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일상감사 제도의 실질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일상감사 의견과 다른 조치를 하면서 사실과 달리 보고하거나 이를 누락하는 등으로 관련 절차를 위반할 경우 자칫 일상감사 제도를 형해화(形骸化)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산림환경연구원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조치할 사항

① 「경상남도 일상감사 규정」 제8조 등을 위반하여 일상감사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감독책임자 산림환경연구원 ○○○○○ ○○○○○○○○○, 실무책임자 산림환경연구원 ○○○○○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②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표]

##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 생략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제 목 유연근무자 출·퇴근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림환경연구원

조 치 기 관 산림환경연구원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과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통상의 근무 시간이나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등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V. 유연근무제, 4. 공통사항, 마. 출·퇴근 지정에 따르면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유연근무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에 정해진 출근시간(오전9시) 또는 퇴근시간(오후6시)을 변경한 경우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서장 등 관리자는 복무관리시스템에 소속 공무원의 출·퇴근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퇴근 미지정에 따른 복무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상남도 인사과에서는 2019. 7. 2. ‘2019년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 계획’(인사과-19202호) 공문을 전 부서 및 직속기관·사업소에 통보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유연근무 대상자는 출·퇴근 시 반드시 초과지문인식기를 체크하고, 부서별로 유연근무 참여자에 대한 자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안내하였다.

따라서 유연근무 대상자는 반드시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는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연 1회 이상 유연근무 복무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2018. 8. 1.부터 2022. 5. 31.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직원 29명에 대해 총 294회<sup>2)</sup>의 유연근무를 승인하였음에도 유연근무 대상자들의 출·퇴근 등록 여부 등에 대한 복무실태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번 감사기간('22. 5. 25. ~ 5. 31.) 중 위 유연근무 대상자 29명에 대한 복무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 ‘유연근무자 출·퇴근 미등록 현황’과 같이 ○○○○○ ○○○은 2018. 11. 20. 08:30부터 17:30까지 유연근무를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후 같은 날 08:09 출근 등록은 하였으나 퇴근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11. 29. 08:30부터 17:30까지 유연근무를 하는 것으로 승인 받았음에도 출근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에 따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토요일 휴무)이며,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되어 있음  
2) 개인별 유연근무 승인일자 합산 횟수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유연근무를 승인 받은 후 총 4회에 걸쳐 출근 또는 퇴근 등록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 ○○○은 2020. 4. 3. 08:00부터 17:00까지 유연근무를 하는 것으로 승인 받은 후 07:50 출근 등록은 하였으나 같은 날 퇴근 등록은 하지 않는 등 유연근무를 승인 받은 후 총 4회에 걸쳐 퇴근 등록을 하지 않았다.

[표] 유연근무자 출·퇴근 미등록 현황

연번	직 급	성 명	유연근무 승인 현황			출·퇴근 등록시간		부적정 내 용	비고
			유 형	유연근무일	승인시간	출근	퇴근		
1	○○7급	○○○	시차출퇴근	'18.11.20.	08:30~17:30	08:09	-	퇴근 미등록	관리과
2	○○7급	○○○	시차출퇴근	'18.11.29.	08:30~17:30	-	16:01 (조퇴)	출근 미등록	
3	○○7급	○○○	시차출퇴근	'18.12.11.	08:30~17:30	-	20:06	출근 미등록	
4	○○7급	○○○	시차출퇴근	'18.12.13.	08:30~17:30	08:55 (지각)	-	퇴근 미등록	
5	○○6급	○○○	시차출퇴근	'20. 4. 3.	08:00~17:00	07:50	-	퇴근 미등록	산지 보전과
6	○○6급	○○○	시차출퇴근	'20. 4.17.	08:00~17:00	07:57	-	퇴근 미등록	
7	○○6급	○○○	근무시간선택	'20. 5. 6.	08:00~18:00	07:56	-	퇴근 미등록	
8	○○6급	○○○	근무시간선택	'20. 5. 8.	08:00~16:00	07:55	-	퇴근 미등록	

### 관계기관 의견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연 1회 이상 복무실태 점검을 해야 하는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였고 직원들 스스로도 복무 관리에 소홀하였으나,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1조의2 및 제3조 등을 위반하여 유연근무 시 4회에 걸쳐 출근 또는 퇴근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환경연구원 관리과 지방○○○○○○○○(현 지방○○○○, ○○○○과)**, 4회에 걸쳐 퇴근 등록하지 않은 **산림환경연구원 ○○○○○ 지방○○○○ ○○○(현 ○○○○과)**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②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시정

제 목 당직근무자 등 초과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림환경연구원  
조 치 기 관 산림환경연구원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산림환경연구원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2(당직수당) 및 「경상남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2조(당직의 구분) 등에 따라 당직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및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등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및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VI. 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르면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sup>1)</sup>, 휴일

1) 당직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하고,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2(당직수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및 토요일에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은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 시간에 대하여 정상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여 지급<sup>2)</sup>하되, 동일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2조(당직의 구분)에서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일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sup>3)</sup>에 따르고,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 인사과에서는 2021. 1. 12. “초과근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관리·감독 철저 요청(인사과-832호)”을 통보하면서, 2020. 12. 31.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으로 [별표 1의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담수령 징계기준이 신설됨에 따른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를 안내하였다.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원 당직근무 및 휴일근무 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당직근무시간 또는 휴일·토요일 정상근무 시간(이하 ‘휴일근무시간’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사전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지문인식시스템의 지문 등록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중복 수령해서는 아니 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림환경연구원 ○○○○○와 ○○○○○○ 당직근무자 ○○○ 등 4명은 당직근무를 명령받았음에도 당직근무시간과 중복하여 사전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지문을 등록하여 [표 1]과 같이 7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총 248,160원을 부적정하게 수령하였다.

2) 9시부터 18시 중 일부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함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임

[표 1] 당직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중복 수령 현황

(단위 : 원)

연 번	근무일자	성명	구분	당직일 초과근무 정산내역			(가) 중복 시간 분	(나) 당월정산 수당시간 시간(분)	(다) 당월정당 수당시간 [(나)-(다)]	(라) 환수 시간* [(나)-(다)]	(마) 지급 단가	(바) 환수 금액 [(라)*(마)]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인정 시간						
<b>총계</b>		<b>4명</b>										<b>248,160</b>
○○○○○○ 소계		<b>2명</b>										<b>215,040</b>
1	'20-01-04	○○○	일직	08:55	18:03	240	240	13:15 (794)	09:14 (554)	4	12,000	48,000
2	'20-06-14	○○○	일직	08:54	18:09	240	240	34:53 (2093)	30:53 (1853)	4	12,000	48,000
3	'20-09-06	○○○	일직	08:45	18:12	240	240	51:54 (3114)	47:54 (2874)	4	12,000	48,000
4	'21-03-13	○○○	일직	08:34	18:01	240	240	48:27 (2907)	44:27 (2667)	4	8,880	35,520
5	'21-06-20	○○○	일직	08:44	18:03	240	240	56:29 (3389)	52:29 (3149)	4	8,880	35,520
○○○○○○ 소계		<b>2명</b>										<b>33,120</b>
6	'21-06-27	○○○	숙직	16:36	18:32	116	32	57:28 (3448)	56:56 (3416)	1	12,120	12,120
7	'19-09-28	○○○	숙직	16:41	20:16	215	136	41:25 (2485)	39:09 (2349)	2	10,500	21,000

[출처 : 산림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분단위 절사

또한 ○○○○○○ ○○○ 등 2명은 휴일근무를 명령받고도 휴일근무시간과 중복하여 사전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지문인식시스템에 지문을 등록하여 [표 2]와 같이 초과근무수당 총 47,920원을 중복 수령하였다.

[표 2] 휴일근무수당 수령자의 초과근무수당 중복수령 현황

(단위: 원)

연 번	근무일자	성명	구분	당직일 초과근무 정산내역			(가) 중복 시간 분	(나) 당월정산 수당시간 시간(분)	(다) 당월정당 수당시간 [(나)-(가)]	(라) 환수 시간* [(나)-(가)]	(마) 지급 단가	(바) 환수 금액 [(라)*(마)]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인정 시간						
<b>총계</b>		<b>2명</b>										<b>47,920</b>
1	'21-04-10	○○○	휴일 근무	07:17	12:32	240	137	56:00 (3360)	53:43 (3223)	3	12,120	36,360
2	'20-01-27	○○○	휴일 근무	07:00	09:08	128	8	55:06 (3306)	54:55 (3298)	1	11,560	11,560

[출처 : 산림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분단위 절사

## 관계기관 의견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당직 및 휴일근무 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 및 휴일근무 시간과 중복하여 사전 초과근무 신청하고 지문등록시스템에 지문을 등록하지 않도록 복무에 철저를 기했어야 하나, 그 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리과 등 복무관리 부서에서 직원 회의 시 또는 도 메신저를 통해 2021. 1. 1.부터 개정·시행된 초과근무 부정수급에 대한 징계규정에 대하여 교육 및 안내를 하였으나, 그 횟수와 강도에 있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으며, 앞으로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 조치할 사항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7조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VI. 초과근무수당 등을 위반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수령한 산림환경연구원 ○○○○○ 지방○○○ ○○○(현 ○○○), 산림환경연구원 ○○○○○○ 지방○○○ ○○○(현 산림환경연구원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산림환경연구원 ○○○○○○ 지방○○○ ○○○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훈계, 주의)

②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부적정하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296,080원은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직원들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제 목 지출원 부재 중 회계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림환경연구원

조 치 기 관 산림환경연구원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및 「경상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라 [표 1]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산림환경연구원 회계관직 지정 현황

구 분	재무관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산림환경연구원	원 장	관리담당	관리담당 회계담당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 장	관리담당	관리담당 회계담당자

[출처 : 산림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기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대행 및 대리) 및 제4조(책임)에 따르면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실 및 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 직원 중 최상급자, 분장사무 중 사무분야 담당 순위에 의한 사무관의 순으로 대리하며,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118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에 따르면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그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출업무를 대리할 회계관계직원을 지정하여 지출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지 않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2018. 8. 1.부터 2022. 5. 31.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지출원이 휴가 등으로 부재중임에도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회계담당자가 지출원의 구두승인 및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아이디를 공유하여 지급명령을 이행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102건, 380,219천 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하였다.

[표 2] 지출원 부재 중 회계처리 부적정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지출원 실무담당자	지출일자	지출금액	지출내용
합계	13회		380,319	102건
1	지방○○○ ○○○ 지방○○○ ○○○	2018-10-31	60,902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 11건
2	지방○○○ ○○○ 지방○○○ ○○○	2018-10-31	29,208	양치식물원 관람데크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 등 3건

(단위 : 천 원)

연번	지출원 실무담당자	지출일자	지출금액	지출내용
3	지방○○○ ○○○ 지방○○○ ○○○	2018-12-06	7,068	○○○○○○○ 매표소 지붕 수리 등 15건
4	지방○○○ ○○○ 지방○○○ ○○○	2019-07-19	55,679	7월 월급여 지급(일반직) 등 17건
5	지방○○○ ○○○ 지방○○○ ○○○	2019-10-21	11	휴양림 9월분 안심벨 사용료 납부
6	지방○○○ ○○○ 지방○○○ ○○○	2020-02-03	53,250	○○○○○○○ 생태수목원 LED채널간판 설치 등 18건
7	지방○○○ ○○○ 지방○○○ ○○○	2020-09-25	42,097	휴양림 기간제노동자[숙박시설환경정비(하반기)] 인건비 및 보험료 납부(9월) 등 10건
8	지방○○○ ○○○ 지방○○○ ○○○	2021-02-10	5,483	2021년 1월분 공무원 노동자 인건비 지급 및 기관부담 4대 보험료 납부 등 6건
9	지방○○○ ○○○ 지방○○○ ○○○	2021-05-21	2,237	야영장 상수도 시설 수리(도토리책방) 등 3건
10	지방○○○ ○○○ 지방○○○ ○○○	2021-05-31	83,886	2021년도 5월분 공무원 노동자 인건비 지급 등 12건
11	지방○○○ ○○○ 지방○○○ ○○○	2021-05-31	833	2021년 ○○○○○○ 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 시행 건의 등 2건
12	지방○○○ ○○○ 지방○○○ ○○○	2021-06-18	39,517	2021년 6월 월급여 지급(일반직) 등 3건
13	지방○○○ ○○○ 지방○○○ ○○○	2021-06-28	48	2021년 소방안전관리자 법정실무교육비 지급

[출처 : 산림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지출원 부재시 구두 승인을 받아 지급명령을 이행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으며, 향후 지출업무담당자와 지출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출원 부재시 지출업무를 대리할 회계관계직원을 지정하여 지출업무를 처리하는 등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등을 위반하여 지출원 부재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지출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지출원) 산림환경연구원 ○○○○○○ 지방○○○ ○○○(현 ○○○○○○), 지방○○○ ○○○(현 ○○○○○○)과 실무담당자 산림환경연구원 ○○○○○○ 지방○○○ ○○○(현 지방○○○,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 ②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제 목 차량 임차용역 분할 수의계약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림환경연구원

조 치 기 관 산림환경연구원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사방사업 및 산림연구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취득한 공용차량 외에 별도의 임시차량을 [표 1]과 같이 임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임시차량 임차현황

(금액단위 : 천 원)

기 관	연 도	임차대수	임차금액	비 고	
합 계		62	360,993		
산림환경연구원	2018	8	61,753	임차기간 최소 2개월 ~ 최대 1년 미만	
	2019	13	72,700		
	2020	13	69,426		
	2021	15	76,299		
	2022	10	67,595		
소 계		59	347,773		
금원산산림자원 관리소	2019	1	3,500		
	2020	1	4,620		
	2021	1	5,100		
소 계		3	13,220		

[출처 : 산림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르면 계약체결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용역 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상남도 회계과-22194호(2007. 10. 12)에 따르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 용역의 경우에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하향 조정되었고, 추정가격 1천만 원 초과 용역 계약에 대해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계약 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추정가격 1천만 원 초과 용역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에게 1인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림환경연구원 ○○과에서는 2018. 8. 1.부터 2022. 5. 31. 감사일 현재까지 ○○○○○와 ○○○○○의 임시차량 임차 요청에 따른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매년 2 ~ 5회에 걸쳐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거나, 추정가격 1천만 원 초과인데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표 2]와 같이 총 21건, 197,160천 원을 집행하였다.

[표 2] 차량 임차용역 분할 수의계약 현황

(금액단위 : 천 원)

연도별	분할횟수	임차대수	임차금액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비 고
합 계	21	24	197,160			
2019	5	6	53,700	1인 수의계약	○○○○ 등 2개 업체	1천만 원 초과인데도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3회 계약 체결 (’19 ~ ’21년 각 1회)
2020	5	6	51,720	1인 수의계약	○○○○ 등 2개 업체	
2021	6	7	51,060	1인 수의계약	○○○○○	
2022	5	5	40,680	1인 수의계약	○○○○○	

[출처 : 산림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차량 임차용역 분할 수의계약 세부내역 [별첨] 참조

이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원 ○○과에서는 총 21회에 걸쳐 197,160천 원의 차량 임차용역을 집행하면서 3개 업체<sup>1)</sup>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었던 동종업체의 기회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대 23,659천 원<sup>2)</sup>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계약 실무담당자는 대부분 시군에서 전입 온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업무 처리에 미숙함이 있었지만, 철저한 업무 연찬과 계약 관련 교육 이수 등 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주) 10회 91,740천 원, ○○○○(주) 6회 70,440천 원, ○○○○(주) 4회 34,980천 원

2) 총 계약금액 197,160천 원 - (197,160천 원 × 88%) = 23,659천 원(예정가격의 88% 이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조치할 사항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등을 위반하여 차량 임차용역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산림환경연구원 ○○과 지방○○○ ○○○(현 지방○○○, ○○○○○), 지방○○○ ○○○(현 지방○○○, ○○○○○), 지방○○○ ○○○(현 지방○○○, ○○○○○○○), 지방○○○ ○○○(현 지방○○○,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 ②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차량 임차용역 분할 수의계약 세부내역

연도	사용부서	계약의뢰	계약일	임차기간	임차금액 (천 원)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비고
<b>합계</b>	<b>21건</b>			<b>24대</b>	<b>197,160</b>			
2019	○○○○	'18. 12. 26.	'19. 1. 1.	'19. 1. 1. ~ '19. 12. 31.	9,600	1인 수의	○○○○	
2019	○○○○		'19. 1. 1.	'19. 1. 1. ~ '19. 12. 31.	6,960	1인 수의	○○○○	
2019	○○○○		'19. 1. 1.	'19. 1. 1. ~ '19. 12. 31.	8,340	1인 수의	○○○○	
2019	○○○○	'18. 12. 21.	'19. 1. 1. (2대)	'19. 1. 1. ~ '19. 12. 31.	19,200	1인 수의	○○○○	지정정보처리 장치 미이용
2019	○○○○		'19.1.1.	'19. 1. 1. ~ '19. 12. 31.	9,600	1인 수의	○○○○	
2020	○○○○	'19. 12. 26.	'20. 1. 1.	'20. 1. 1. ~ '20. 12. 31.	9,600	1인 수의	○○○○	
2020	○○○○		'20. 1. 1.	'20. 1. 1. ~ '20. 12. 31.	6,960	1인 수의	○○○○	
2020	○○○○		'20. 1. 1.	'20. 1. 1. ~ '20. 12. 31.	7,440	1인 수의	○○○○	
2020	○○○○	'19. 12. 30.	'20. 1. 1. (2대)	'20. 1. 1. ~ '20. 12. 31.	18,480	1인 수의	○○○○	지정정보처리 장치 미이용
2020	○○○○		'20. 1. 1.	'20. 1. 1. ~ '20. 12. 31.	9,240	1인 수의	○○○○	
2021	○○○○	'21. 2. 17.	'21. 3. 1.	'21. 3. 1. ~ '21. 12. 31.	6,500	1인 수의	○○○○	
2021	○○○○		'21. 3. 1.	'21. 3. 1. ~ '21. 12. 31.	7,150	1인 수의	○○○○	
2021	○○○○		'21. 3. 1.	'21. 3. 1. ~ '21. 12. 31.	7,150	1인 수의	○○○○	
2021	○○○○		'21. 3. 1.	'21. 3. 1. ~ '21. 12. 31.	6,500	1인 수의	○○○○	
2021	○○○○	'20. 12. 22.	'21. 1. 1.	'21. 1. 1. ~ '21. 12. 31.	7,920	1인 수의	○○○○	
2021	○○○○		'21. 1. 1. (2대)	'21. 1. 1. ~ '21. 12. 31.	15,840	1인 수의	○○○○	지정정보처리 장치 미이용
2022	○○○○	'21. 12. 23.	'21. 12. 30.	'22. 1. 1. ~ '22. 12. 31.	10,200	1인 수의	○○○○	
2022	○○○○		'21. 12. 30.	'22. 1. 1. ~ '22. 12. 31.	6,960	1인 수의	○○○○	
2022	○○○○		'21. 12. 30.	'22. 1. 1. ~ '22. 12. 31.	7,800	1인 수의	○○○○	
2022	○○○○		'21. 12. 30.	'22. 1. 1. ~ '22. 12. 31.	7,800	1인 수의	○○○○	
2022	○○○○	'21. 12. 23.	'21. 12. 30.	'22.1. 1. ~ '22. 12. 31.	7,920	1인 수의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

제 목 공사감독 피복비(시설부대비) 수령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림환경연구원  
조 치 기 관 산림환경연구원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2018. 8. 1.부터 2022. 5. 31.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시설부대비로 총 16건, 19,657천 원을 공사감독 피복비 명목으로 집행하였다.

[표 1] 공사감독 피복 집행현황

(금액단위: 천 원)

구분	부서명	예산과목	집행건수	집행금액	비고
합계			16	19,657	
본원	○○○○○	시설부대비	1	324	
	○○○○○		1	380	
	○○○○○		8	15,914	
지소	○○○○○		6	3,039	

[출처 : 산림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시설부대비(401-03)를 현장감독공무원 피복비 등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고,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와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 및 입회자 등

에게는 예비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장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공사기간<sup>1)</sup>, 구매대상 물품의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sup>2)</sup>, 가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현장 감독공무원이 시설부대비를 피복비로 지급 받을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고 시설부대비 예산을 본인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익이 추구되는 행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2018. 8. 1.부터 2022. 5. 31. 감사일 현재까지 시설부대비로 총 16건, 19,657천원을 공사감독공무원의 피복비로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현장 공사감독공무원이 아닌 자 등이 피복비를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가. 현장 공사감독공무원이 아닌 자 등의 피복비 수령 부적정

○○○○○에서는 시설부대비를 집행하면서 현장 공사감독공무원이 아닌 준공 검사공무원 등이 [표 2]와 같이 총 5건, 718천 원을 피복비로 수령하였다.

[표 2] 현장공사감독이 아닌 자 등이 수령한 내역

(금액단위: 천 원)

구분	부서명	수령일자	수령금액	수령자		비고
				직급	성명	
총계	5건		718	5명		
1	○○○○○	2018.12.21.	188	지방○○○	○○○	준공검사공무원
2		2018.12.21.	188	지방○○○	○○○	준공검사공무원
3		2019.12.18.	114	지방○○○	○○○	물품감독공무원
4		2019.12.18.	114	지방○○○	○○○	물품용역 감독공무원
5		2019.12.18.	114	지방○○○	○○○	물품감독공무원

[출처 : 산림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1) 동일기간 다수현장 감독자에 대한 중복지급 제한  
2) 공사감독용 안전모, 안전화 등 실제 필요성

나. 공사종료 직전 또는 준공일에 피복비 수령 부적정

○○○○○에서는 시설부대비를 집행하면서 현장 공사감독공무원이 공사가 준공되어 현장감독 업무수행이 필요하지 않거나 특별한 수령 사유가 없는데도 준공 직전 또는 준공일에 [표 3]과 같이 총 2건, 388천 원을 피복비로 수령하였다.

[표 3] 공사종료 직전 또는 준공일에 피복비를 수령한 내역

(금액단위: 천 원)

구분	부서명	수령일자	공사기간	준공일	수령금액	수령자		비고
						직급	성명	
총계	2건				388	2명		
1	○○○	2018.12.21.	2018. 11. 7.~ 12. 26.	2018.12.21.	188	지방○○○	○○○	준공일
2	○○	2020.12.14.	2020. 10. 12.~ 12. 20.	2020.12.20.	200	지방○○○	○○○	준공 직전

[출처 : 산림환경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담당자가 피복비 지급 규정 및 지침을 광의적으로 해석한 책임이 있으며, 내부기준을 만들어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사업 중 시설부대비(피복비 부분) 예산이 엄중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위반하여 공사종료 직전 및 준공일 또는 현장 공사감독이 아닌 자가 피복비(시설부대비)를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실무책임자 산림환경연구원 ○○○○○ 지방○○○ ○○○(현 ○○○○○), 지방○○○ ○○○(현 ○○○), 지방○○○ ○○○(현 ○○○○○), 실무담당자 지방○○○ ○○○(현 산림환경연구원 ○○○○○), 지방○○○ ○○○(현 산림환경연구원 ○○○○○), 지방○○○ ○○○(현 산림환경연구원 ○○○○○)을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②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 보완사업(입구 조형물 교체) 공사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산림환경연구원

조 치 기 관 산림환경연구원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노후된 ○○○○○의 입구 조형물을 교체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2020. 8. 18. (주)○○○○ 대표 ○○○과 도금액 175백만 원에 '2020년 ○○○○○ 보완사업(입구 조형물 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2. 21. 준공하였다.

[표 1] ○○○○○ 보완사업(입구 조형물 교체) 현황

사 업 명	계약 일자	위 치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비 고
				계	도급	관급			
2020년 ○○○○○ 보완사업 (입구 조형물 교체)	'20. 8. 18.	○○시 ○○○면 ○○리 ○○-1번지 (○○○○○ 입구)	입구 조형물 교체	175	175	-	'20. 8. 24. ~ '20. 12. 21.	(주)○○○○ 대표 ○○○	

[출처 : 산림환경연구원 ○○○ 제출자료 재구성]

### 2. 공작물축조신고 협의 누락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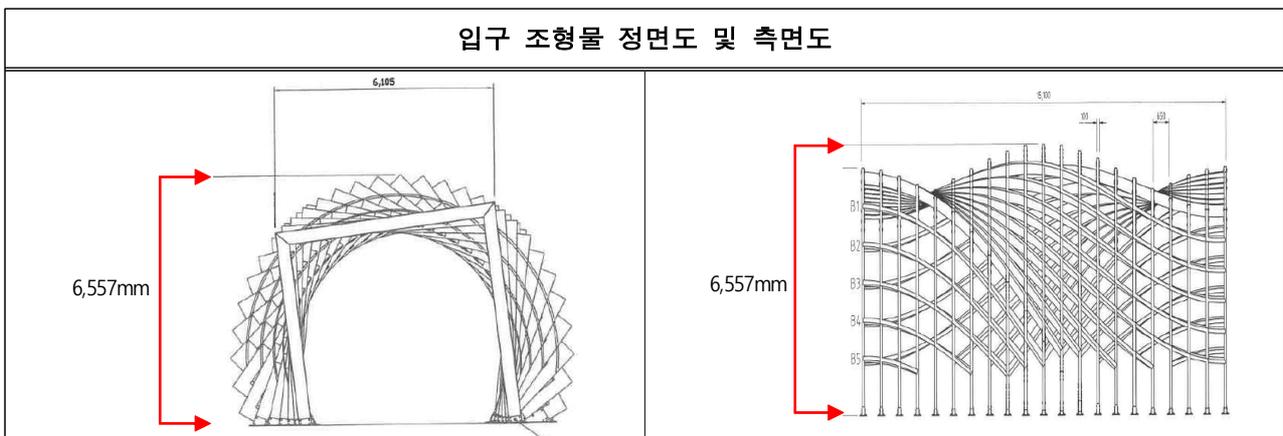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예의 준용)에 따르면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축조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사업의 목적물이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등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권자인 ○○○와 협의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의 입구조형물을 축조하면서 조형물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6.557m임에도 허가권자인 ○○○와 공작물축조신고 협의 없이 2020. 8. 24. 착공하였다.

[그림 1] 입구 조형물 현황



[출처 : 산림환경연구원 ○○○ 제출자료 재구성]

## 3. 공사감독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및 제138조(시공 확인)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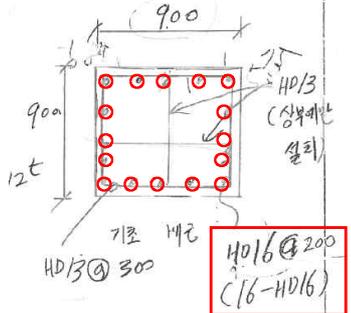
따라서 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공사감독을 수행하면서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감독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건설사업자 (주)○○○○ 대표 ○○○ (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콘크리트 기초를 시공하면서 [그림 2]와 같이 구조계산서에 따라 16개의 16mm 이형철근을 200mm 간격으로 수직으로 배근<sup>1)</sup>하지 않고 16mm 이형철근 8개만을 수직으로 배근하여 콘크리트 기초를 시공<sup>2)</sup>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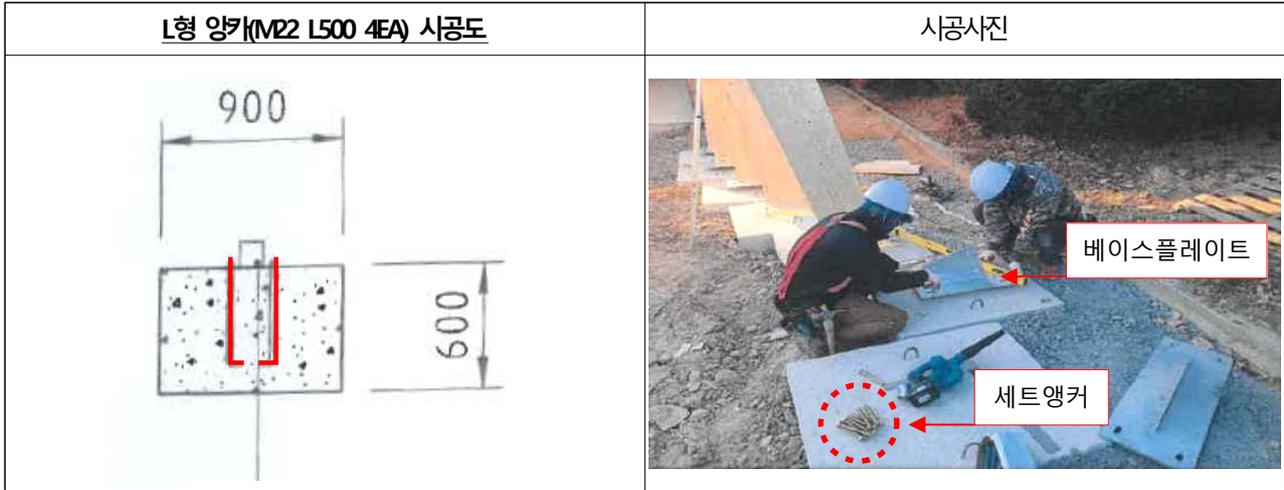
[그림 3]과 같이 베이스플레이트<sup>3)</sup>를 콘크리트 기초에 정착하기 위한 자재인 L형 앵커볼트<sup>4)</sup>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세트앵커<sup>5)</sup>로 시공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표 2]와 같이 시공비 4,431천 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 2] 콘크리트 기초의 설계도서와 시공사진 비교

구조계산서(주각부 상세) 수직철근 : HD16@200(16-HD16)	콘크리트 기초 거푸집 설치사진
	

- 1) 배근(配筋) :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을 설계에 맞추어 배열함
- 2) 콘크리트 기초 시공에 사용된 철근물량 비교 : **누락한 수직철근 물량 0.0768m<sup>3</sup>**(16mm 이형철근, L=600mm, 8개) **추가된 가로·세로철근 물량 0.0819m<sup>3</sup>**(13mm 이형철근, L=900mm, 7개)  
※ 설계도서 대비 **실제 시공된 철근물량이 0.0051m<sup>3</sup> 많음**
- 3) Base plate : 기둥을 기초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각의 끝에 붙여서 앵커볼트로 고정하기 위해 쓰이는 강판
- 4) Anchor bolt : 콘크리트 기초에 견결(견고하게 체결)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볼트임. 본 현장의 L형 앵커볼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직경 22mm, 길이 500mm, 4개**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
- 5) Set anchor : 앵커볼트의 종류로서 콘크리트 타설전 위치를 잡아야 하는 불편함을 보완하여 고정시키고자 하는 상대물을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시공 후 너트를 조이면 파이프와 볼트가 조여져 고정이 되는 원리를 이용함. 본 현장은 세트앵커를 **직경 16mm, 길이 200mm, 4개**로 시공하였음.

[그림 3] 기초 입면도 및 베이스플레이트-세트앵커 시공사진



[출처 : 산림환경연구원 ○○○ 구조계산서 및 준공사진 발취]

[표 2] 앵커볼트설치 시공 내역서 비교 검토

구분	구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단가	금액(원)	단가	금액(원)	단가	금액(원)	단가	금액(원)	
앵커볼트	M22 L500	개소	204	2,037	415,548	28,917	5,899,068	578	117,912	31,532	6,432,528	4,431,152원 과다지급
세트앵커	M16 L200	개소	136	2,552	347,072	11,926	1,621,936	238	32,368	14,716	2,001,376	

[출처 : 산림환경연구원 ○○○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전문성 부족과 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안으로 업무처리가 미숙하였던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재발 방지를 위해 부서 내 관련 직렬 공무원 협조 및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준공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조치할 사항

- 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을 위반하여 공작물축조신고 협의를 누락하고 공사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산림환경연구원 ○○○ 지방○○○ ○○○와 실무담당자의 지도·감독을 부적정하게 한 실무책임자 산림환경연구원 ○○○ 지방○○○ ○○○(현 ○○○○○)를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의’ 처분합니다.(주의)

## 산림환경연구원장은

- ② 공작물축조신고 협의를 조속히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과 과다 지급한 4,431천 원 상당 시공비에 대해서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